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V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

- Preliminary Review -

February, 2009

Written by Nam soo hee
(sooheenam@naver.com)

목 차

제1장 총괄

I. 골프장 설치 및 관리 ----- 1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2. 골프장의 종류
 3. 사업계획 승인제한
 4. 시설설치기준
 5.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6. 회원모집
 7. 체육지도자 배치
 8. 보험가입
 9. 안전위생기준
 10.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
 11.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12. 벌칙 과태료 등

II. 골프장 업무처리 흐름도 ----- 4
 1. 골프장업무 처리 순서
 2. 골프장 사업승인 절차
 <참 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2장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내용

I. 도시관리계획 변경 ----- 5
 1.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지구단위계획 개발여부 검토
 2. 도시계획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3. 지구단위계획
 4. 도시관리계획 변경전 적성평가 실시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도

II. 농지전용협의(허가) ----- 6
 1. 농지전용 협의 근거 및 종류
 2. 농지전용 협의(허가)권자
 3. 농지전용 협의 신청시 유의사항
 4. 농지전용 협의의 효력
 5. 농지전용협의 절차도

III. 보전임지전용, 산림형질변경 ----- 8
 1. 근거법령
 2. 업무협의등 처리방법
 3. 골프장조성가능지역과 편입할 수 없는 일야 면적기준
 4. 보전임지 전용협의
 5. 준보전임지 산림형질변경 협의
 6.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해제
 <붙임1>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기준

IV. 문화재 보호물, 구역 해제 ----- 10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2.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

V. 무연분묘의 개장 ----- 11
 1. 무연분묘 개장공고
 2. 공고방법
 3. 개장절차
 4. 매장 및 안치
 5. 무연분묘 개장시 유의사항

VI. 환경영향 평가협의 ----- 12
 1. 환경영향 평가 의의 및 목적
 2.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4. 평가서 협의
 5. 협의내용 관리
 6. 환경영향평가가 절차도

VII.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 13
 1.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의 의의
 2. 구비서류
 3. 협의기관 및 기간
 4. 협의절차

VIII. 조수보호구역 해제 협의 ----- 14
 1. 조수보호구역 지정
 2. 조수보호구역 해제
 3. 조수보호구역안에서의 이용, 개발행위

IX. 교통영향평가 ----- 15
 1. 평가개요
 2. 심의대상
 3.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4.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X. 지방재해영향 평가 ----- 16
 1. 지방재해영향평가 근거
 2. 대상사업 및 규모
 3. 재해영향평가 심의 절차도
 4. 심의방법
 <참고>실과별 참고문헌

제3장 골프장 인허가 절차 및 관련법규

1. 골프장 체육시설 인허가 세부 일정 ----- 17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중 체육시설 ----- 18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18
 4.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19
 5. 환경관련 법규 ----- 19
 7. 기타관련 사항 ----- 19
 8. 골프장 입지 법규 저촉사항 검토 ----- 20

제4장 Summary

I. 법령 및 타당성 검토 ----- 21
 1. 사업의 타당성과 적용해야 할 법령 검토
 2. 개발행위 허가/용도지역·지구별 건축제한
 3.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II. 사업계획 승인 ----- 21
 1.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2.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3.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4.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5. 체육시설업의 사전계획 승인신청
 6. 협의
 7. 사업계획승인

8. 타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와 별도의 인허가
 9. 사업계획승인 제한
 10. 회원모집
 11. 대중골프장의 병설

III. 골프코스 등의 조성 및 건축물의 건축(체육시설의 설치) ----- 24

IV. 골프장업 등록(체육시설업 등록) ----- 24
 1. 회원제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의 구분등록 신청
 2. 체육시설업의 등록신청
 3. 등록
 4.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5. 사업자 등록과 골프장 영입개시(체육시설 영입개시)

V. 골프장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27
 1. 추진 Flow
 2. 골프장사업 세후추진 업무 Flow
 3. 체2종 지구단위 인허가 추진지 Flow
 4. 골프장 체육시설 인허가 Flow
 5. 골프장 설계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33

제 1장 총괄

I. 골프장 설치 및 관리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1. 골프장업의 개념

골프장업은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하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시, 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다시 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해야하는 체육시설업임

2. 골프장 종류

가. 회원제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 위주로 운영하는 골프장
- “회원”의 의미 :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골프장 사업자와 약정한 자
- 규모 : 18홀 이상이어야 하고,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이상(1홀당 평균길이는 333m)

나. 대중 골프장

- 회원을 모집할 수 없으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골프장
- 종류 및 규모
 - 정규대중골프장 : 18홀 이상, 총코스 길이는 18홀 기준으로 6,000m
 - 일반대중골프장 : 9홀~18홀 미만, 총코스 길이는 9홀 기준으로 3,000m
 - 간이골프장 : 3홀~9홀 미만, 6홀 기준으로 2,000m
 - 총 코스 길이는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를 증감할 수 있음.

3. 사업계획 승인 제한

- 제한의 의미 :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
- 제한내용
 - ※ 제한사유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존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복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제한함.
 - ① 대중골프장의 회원제골프장 변경제한
 - 공사중 또는 운영중인 대중골프장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원제골프장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 ②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입지제한
 - 일반상수원의 경우에는 상류 유하거리10km, 광역상수원의 경우에는 유하거리 상류 20km이내에 골프장 설치가 금지됨.
 - 상수원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 상류 15km, 하류 1km이내에 골프장 입

지 금지

- 시도 총임야면적기준 골프장면적이 5%(시군구 기준 3%)를 초과하는 경우
- 25만㎡이상의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18홀이상 골프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시설설치 기준

가. 부지면적 제한

- ※ 제한사유 : 골프장 설치, 운영상 불필요한 토지소유 억제, 부동산 투기방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 6홀미만 : 6만㎡ +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 면적추가 가능)
- 6홀~9홀미만 : 34만㎡ +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 면적추가 가능)
- 9홀~18홀미만 : 50만㎡ +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 면적추가 가능)
- 18홀이상 : 108만㎡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 면적추가 가능)

나.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시설업 설치제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시행령 제9조)

-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이 아닌 지역
-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 유하거리 40km이내,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 20km이내,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30km이거나 하류방향 1km이내가 아닌 지역
- 수질기준 1등급 고시하천 상류방향 20km이내가 아닌 지역
- 환경영향평가시 녹지로 보전키로 협의한 지역이 아닐 것
- 골프장규모가 18홀이상일 것
-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5mg/l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 : 여관, 호텔, 여인숙, 콘도미니엄 등

다.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 제한(시행령 제9조)

- ※ 클럽하우스 개념 : 골프장 부지안의 건축물로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복도, 계단 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관리, 운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함.

○ 클럽하우스 연건축면적 제한

- 9홀미만 : 500㎡ 이내
- 9홀~18홀미만 : 600㎡이내
- 18홀 : 3,300㎡이내
- 18홀 초과 : 3,300㎡ +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 추가) 이내

5.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구비서류

가. 법인등기부 등본

나.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다. 토지명세서

라. 부동산 등기부등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 바.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 야 한다)
- 사.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아.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자.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 방법
 - 차. 주요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 카.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 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회원모집(법률 제19조)

가. 회원모집 시기(시행령 제17조)

-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부터 모집 가능

나. 회원모집방법 및 모집절차

- 회원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회원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함.

다. 회원모집 총인원

- 회원모집약관에 회원모집예정 총인원수를 명시하고, 그 인원수 범위내에서 회원모집

라.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 회원모집시에는 모집개시일 30일전까지 회원모집계획서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
 - 회원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모집결과를 보고

마.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는 가능하며, 양도, 양수에 따른 명의개서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바. 입회금액의 반환

- 사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바에 의한.
- 약정기간 도래시 회원이 요구하면 입회금액을 반환

사. 회원증 확인, 교부

- 회원제골프장 사업자는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의 확인을 받아 각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함.

아. 회원대표기구

-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10인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 회원의 권익과 관련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7. 체육지도자 배치(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체육지도자 자격 :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를 말함.
 - 18홀 미만 : 없음
 - 18홀~36홀 : 1인 이상
 - 36홀 초과 : 2인 이상

8. 보험 가입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9. 안전위생기준(시행규칙 제23조)

- 골프장에는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을 배치하여야 함.
 - 18홀 이하 : 1인 이상
 - 18홀 초과 : 2인 이상

10.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법률제28조)

가. 농약사용량 조사

- 조사기관 : 시, 도지사
- 결과보고 : 문화관광부장관, 환경부장관
 - 시기 : 매 반기
 - 조사항목 : 농약구입량 및 사용량

나. 토양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 검사시기 :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2회 이상(상, 하반기 각 1회이상)
- 검사지역 : 그린과 웨어웨이를 구분 실시
- 시료채취 : 동일지역 내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해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 이상 채취

다.)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

- 검사시기 : 토양과 동일
- 시료채취 : 골프장 부지경계선의 최종유출구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

11.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 시, 도지사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얻은 때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 시, 도지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때
 - 변경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등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12. 벌칙 과태료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 등록(변경등록 제외)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 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를 배치한 자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II. 골프장업무 처리 흐름도

1. 골프장 업무처리 절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가. 사업주체 : 기초조사(도시관리계획<안>, 토지적성평가서 작성, 환경성, 교통성 검토 등) → 법 제27조
- 나. 시장, 군수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입안 (사업자 → 토지면적 80%이상 확보 또는 동의서) → 법 제26조
- 다. 시장, 군수 : 공람, 공고, 주민의견청취 → 법 제28조 1항
 - 2개이상 일간신문 공고(14일이상 일반공람)
 - 관련실과 협의
 - 시, 군의회 의견청취(법 제28조제5항)
 -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법 시행령 제23조)
- 라. 시장, 군수 → 도지사 : 관리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 법 시행령 제23조
 - 도시관리계획도서, 계획설명서, 행정기관장과의 협의서류, 지방 의회의견청취결과 등
- 마. 도지사 :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농지, 산림, 환경 등, 30일내 의견제시) → 법 제30조제1항
- 바. 도지사 :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고시 → 법 제30조
- 사. 시장, 군수 : 일반공람 → 법 제30조제6항
- 아. 사업자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 법 제85조제5항
- 자. 시장, 군수 :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 법 시행규칙 제14조
- 차. 사업자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서, 농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 인·허가 서류 첨부) → 법 제88조
- 카. 시장·군수 : 관련실과 협의(30일내 의견제시) → 법 제92조
- 타. 시장·군수 → 도지사 :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전달
- 파. 도지사 :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인·허가 의제처리·체시법에 의한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 법 제30조제1항, 제92조
- 하. 도지사 : 공람·공고·주민의견청취 → 법 제90조
 -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20일 이상 일반공람)
- 거. 도지사 : 결정·고시(사업승인) → 법 제91조
- 네. 사업자 : 사업시행(공사착공 → 준공) → 법 제30조제6항
- 더. 사업자 → 도지사 : 준공신청(시장·군수 전달)
- 러. 도지사 : 준공공고
- 머. 사업자 → 도지사 : 체육시설업 등록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1조

2. 골프장사업 승인 절차

- 별첨 자료 참조

<참고>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타)일부개정 2008.11.6 국토해양부령 제66호]

1.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00조)

- 가.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농

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 나.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 ※ 원칙적으로 3제곱킬로미터(골프장 및 스키장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6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태로 보전할 것

2.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지역외의 지역) (제101조)

-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
- 나. 산경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 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체육시설 부지 기준

-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 2)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 (소각장을 포함)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2장 개별법령에 의한 협의내용

I. 도시관리계획 변경

1.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 여부 검토

- 도시계획시설 : 유원지, 체육시설(9홀이상골프장 등)
- 지구단위계획 : 체육시설(9홀이상골프장) + 관광휴양시설등 복합시설

2. 도시계획시설설치시 유의사항

가. 골프장(9홀이상)

- 대상용도지역
 - 주거지역중 일반주거,준주거,2종전용주거지역, 상업지역중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 녹지지역중 자연녹지, 생산녹지
 -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
- 최대면적 : 원칙적으로 3km²을 초과할 수 없음
 - ※ 중전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실시계획승인을 별도로 받았으나,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도입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이 의제 됨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유의사항

- 도시계획시설이라도 대상 용도지역이 맞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앞서 용도지역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 용도지역 변경 시
 - 도시관리계획입안에 앞서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통-재해-환경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는 골프장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류도 첨부

3.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이란
 -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물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계획
 - 대상지역에 따라 1종지구단위계획(대부분 도시지역) 2종지구단위계획(주로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 지정대상지역
 -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내 개발진흥지구, 관광특구
 -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등(3만㎡이상)
 - ※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업진흥진흥지역에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불가

- 계획수립절차
 - 지정대상용도지역-지구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 지구단위 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도 : 별첨
- 구역 및 계획 결정권자
 - 구역 : 1km²미만-도지사, 1km²이상-건설교통부장관

4.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 적성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실시주체 : 시장·군수
- 적성등급의 분류 및 적용
 - 보전등급(A등급), 중간등급(B등급), 개발등급(C등급)평가하고
 - 평가결과 A등급은 사업지구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도 : 별첨참조

II. 농지전용 협의(허가)

1. 농지전용 협의의 근거 및 종류

가. 농지전용 협의

- 근거 : 농지법, 농지전용허가 의제 근거가 있는 법률(약 50개)
- 사례 :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관광지조성계획승인 및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농지전용 협의

나. 도시관리계획변경 협의(중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사례 : 관광지지정 및 골프장건설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을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 주의사항

- 이중 나항은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농지전용이므로 농지전용 협의가 아님에 유의
- 농지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조성비 등의 부과 기준일은 가항의 농지전용 협의가 의제되는 인허가 기준일이 됨

2. 농지전용 협의(허가) 권자

구 분	시장·군수	도지사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 내	3천㎡미만	3천㎡이상~3만㎡미만	3만㎡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1만㎡미만	1만㎡이상~10만㎡미만	10만㎡이상
도시관리계획변경(진흥지역 밖)	-	10만㎡미만	해당면적

3. 농지전용 협의의 신청시 유의사항

- 농지전용 대상농지에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사전검토(설치불가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시설물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 농지전용 대상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 될 경우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 농지전용 대상농지에 농업기반시설(농로, 구거, 유지 등)이 편입 될 경우 목적외 사용 또는 용도폐지 승인을 득할 것

4. 농지전용 협의의 효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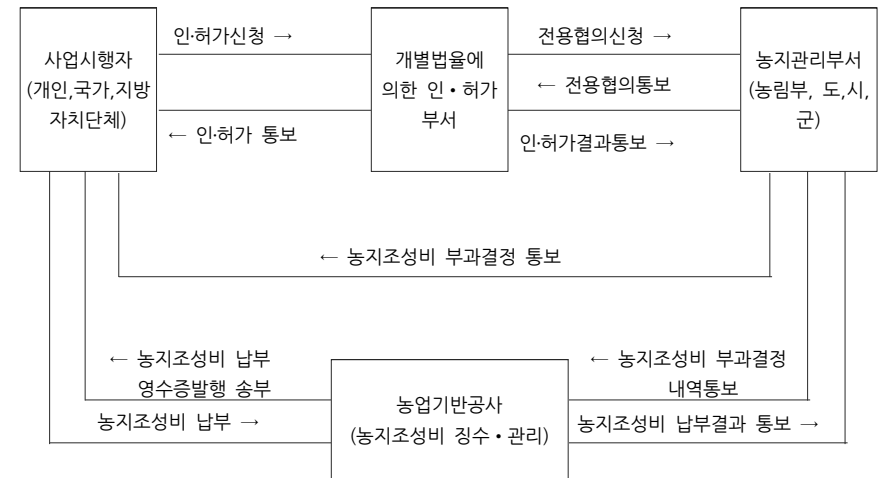
가. 농지전용 협의시 효력 발생

- 농지전용 협의를 통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예도 농지조성비 납부 등 반드시 협의조건을 준수 하여야만 농지 전용 협의(허가)의 효력이 발생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농지 전용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허가신고)를 거쳐야 함
- 각 개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하기전에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인허가가 되었을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나. 인허가 취소시 농지전용관계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되는 인허가 승인 등을 받은 후 그 인허가 승인등이 취소 될 경우에는 의제된 농지전용 허가의 효력이 상실됨(기 납부한 농지조성비는 환급)
- 상기 토지를 제3자가 인수하여 계속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목적 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농지전용 허가(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농지조성비는 전용 허가일 또는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허가일 등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 → 승계처리 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5. 농지전용협의 절차도



※ 농지조성비 부과 기준

- 농지별 농지조성비 단위당 금액
 -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 ㎡당 13,900원
 -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 ㎡당 18,300원
 -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 ㎡당 21,900원
 - 발경지정리가 시행된 밭 : ㎡당 12,500원
 - 기타농지(1, 2, 3, 4를 제외한 농지) : ㎡당 10,300원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별표 1>

농지전용허가협의시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1. 적용대상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산업입지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
- ※ 농지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내** 농지전용협의는 <별표4>-3에 의해 작성

2. 첨부서류 종류 및 작성방법

제출책임	서류명	근거	작성방법	비고
신청자또는 신청기관	①사업계획서 ②소유권(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③지적도(또는 임야도)등 본 ④지형도 ⑤피해방지계획서 ⑥기반정비비용 가산부 과대상농지 확인서	규칙제25조 " " " " " "	규정제4조에 의하여 작성 " " 규정제4조, 별표3에 의하 여 작성 ○공사시행 및 시설물 운 영시 예상되는 피해내용 을 기재하고 피해종류별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농업기반공사등 관계기 관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반드시 명 시 - 농로·수로가 차단될 경 우 대체시설 설치계획 도면(④지형도에 표시) 오페수가 배출될 경우 오페수처리계획도면 첨부 ○별도시달 서식	○전용협의시는 생 략 ○전용허가(협의)권 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인 경우 생략가능 ○사업시행자가 작 성, 날인 ○농지부서에서 확 인

제출책임	서류명	근거	작성방법	비고
시장·군수· 구청장	⑦농지전용심사의견서 ⑧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 ⑨농업기반공사 관리지 역인 경우 지부장의 견서 ⑩사실상농지편입 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 ⑪농업생산기반 시설부 지 편입여부 및 편입 시 그 조서, 관계부서 의견 ⑫편입농지의 농업생산기 반정비(계획)현황 ⑬부과명세서 ⑭농지분야 협의의견서	영제39조, 규칙제29조 영제37조, 제39조 규칙제27조 영제51조	규칙서식제18호에 의하여 작성(의견 결정이유를 구체 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규칙서식제17호에 의하여 작성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다 음 시설부지 편입여부 및 편입시 그 조서를 작성하 고 관계부서(또는 관할 농업기반공사 지부장)의 견첨부 - 양수장·관정·배수장·취입 보·용배수로·유지·농로·방 조제·제방등 별표3-1-나에 의하여 작성 규칙서식 제34호에 의하 여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으로 작성	장관이 허가권자인 경우 도지사심사 의견서 추가 영제39조제2항에 해당하는 전용협의 시는 생략 가능 농지부서에서 확인 기반조성부서에서 확인·날인 기반조성부서에서 확인·날인 농지부서에서 작성 농지부서에서 작성

※ 장관이 허가(협의)권자인 경우로서 농지전용협의와 농업진흥지역변경 승인을 함께 요청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지
정관리규정 <별표5>의 ①, ⑤, ⑩, ⑪의 서류 추가제출

Ⅲ. 보전임지전용-산림형질변경

1. 근거법령

- 산림법 제18조, 제90조, 사방사업법 제20조, 산지관리법 제14조(2003.30시행), 입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 보전임지관리및대체조림비의부과에관한규정(산림청훈령 제741호)

2. 업무협의 등 처리방법

- 『보전임지』는 산림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전용협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고
- 『준보전임지』는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거하여 산림형질변경협의로 처리됨

3. 골프장 조성 가능지역과 편입할 수 없는 임야 면적기준

- 골프장조성가능 용도 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 또는 지구단위계획 지역임
- 총골프장 면적(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이 총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
-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 그 중 보전임지 면적이 사업부지 총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함(산림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및 산림청 고시 2002-38호). 다만, 다음경우는 100분의 50을 초과해도 설치 가능함
 -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 시·군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개발사업 계획지
 - 해당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 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 계획지

4. 보전임지 전용협의

가. 보전임지 편입 규모별 전용권자(산림법시행령 제4조,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별표)

전용권자	보전임지 편입면적 규모(1ha=3,025坪=10,000㎡)	
	농지, 초지이외의 용도(골프장)	농지, 초지 용도
· 산림청장	20ha 이상	20ha 이상
· 도지사	1ha 이상~20ha 미만	10ha 이상~20ha 미만
· 시장/군수	1ha 미만	10ha 미만

나. 보전임지 편입기준(산림청고시 2002-38호)

- 보전임지 :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50이내 다만, 다음 경우 그러하지 않음
 - 대중골프장, 시군종합계획등에 반영된 개발사업 계획지 등
-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우량한산림 : 편입산림 면적의 20%이내
- 입업진흥촉진권역 :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피할 때 이외는 편입불가
- 요존국유림 : 편입불가,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총 임야면적 3ha 이하는 가능
-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 : 불요존국유림과 공유림을 합한 면적이 사업 계획지 총면적의 20%미만으로서 20ha이 하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편입비율기준 적

용 없음

- 사업계획지 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 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사업수행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 연결된 국공유림을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보전임지전용시 유의사항

- 산림법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 가목 : 보안림·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은 전용금지
 - 다목 : 보호수·수형목 및 희귀동·식물 서식지는 원형 그대로 보전
- 보전임지 전용협의기준(산림청고시 2002-38호)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4제1항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의 제한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사·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 2,070 필지 2,750ha
- 전용허가면적 및 산림상태가 산림법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 규정에 적합하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그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지 여부
 - 전용의 대상이 되는 보전임지에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 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사방지, 5년 이내 임도시설자·조림지 등 산림관계법령에 의한 제한 사항이 편입되는지 여부
 - 사방지 해제 : 사방사업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후 사업시행
 - 5년 이내 임도시설자·조림지 : 산림법 제44조,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변상

라. 대체조림비 부과

- 단가(*03) : 1527원/㎡당(산림청장이 매년고시)
- 부과근거 : 산림법 제18조, 산림법시행규칙 제20조의2
- 부과면적 : 보전임지 전용협의 면적중 산림으로 존치할 면적을 제외한 산림형질변경을 받은 면적

5. 준보전임지 산림형질변경 협의(산림법 제90조)

- 가. 허가권자 : 시장·군수
- 나. 준보전임지의 골프장편입기준면적 : 제한없음
- 다. 산림형질변경기준(산림법시행규칙 제90조의2)
 - 경사도 : 평균경사도가 45°이하
 - 입목축적 : 산림형질변경지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의 ha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
 - 입목구성 : 산림형질변경지내에 평균 나이가 50년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이하
- 라.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산림법시행규칙 제91조의4)
 - 국토 및 자연의보전, 문화재 및 국가의 중요한 시설의 보호 기타 공익상 입목의 벌채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할 지역으로 다음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단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사업은 제외
 -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
 - 분묘의 중심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산사태위험지역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재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사도·입목축적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마. 산림형질변경지 복구비산정

(단위 : 천원)

구 분	15°미만	15°~30°미만	15°~30°미만	40°이상
산림형질변경지	25,060	72,659	91,994	113,065

※ 복구비 예치는 해당 시군 허가부서에 예치

6. 산림법상 제한사항에 대한 해제

가. 5년이내의 임도시설지

- 법적근거 : 산림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해제기준 : 임도시설을 임야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 총임도시설거리에 대한 폐지하고자 하는 임도시설거리의 비율에 의한다. 다만, 임도시설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임도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총임도시설에 보조된 금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안에서 우회임도를 시설하게 할 수 있다.
- 절 차 : 현지조사(해당시군)→반환금산정(해당시군)→고지서발급의뢰(국비 : 산림청, 도비 : 도지사, 시군비 : 해당시장군수)→고지서에 의거 납입 후 사업시행

나. 5년이내의 조림지

- 법적근거 : 산림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해제기준 : 조림지를 임야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한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 조림지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한하되, 그 반환액은 조림면적에 대한 산림의 형질변경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 절 차 : 현지조사(해당시군)→반환금산정(해당시군)→고지서발급의뢰(국비 : 산림청, 도비 : 도지사, 시군비 : 해당시장군수)→고지서에 의거 납입후 사업시행

다. 사방시설

- 법적근거 : 사방사업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해제기준 : 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사방사업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비용변상
 -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
 - 현금으로 투자된 사방시설보수비·댈기·흙·비·병해충방제비용·보살피기·작업비용·산불방지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 절 차 : 현지조사(산림환경연구소)→변상금산정(도 산림과)→고지서발급의뢰(국비 : 산림청, 도비 : 도지사, 시

군비 : 해당시장군수)→ 고지서에 의거 납입 후 사업시행

라. 임업진흥권역

- 법적근거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해제기준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거나 사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임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된 때
- 절 차 : 현지조사(해당시군)→해제요구(5ha 미만 : 도지사, 5ha이상 : 산림청장)

마. 채종림수형목

- 법적근거 : 산림법 제51조
- 해제기준 : 편입불가
 - < 해제할수 있는 조건 >
 -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산림이나 수목을 채종림 또는 수형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때
- 해제권자 : 임업연구원장

바. 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호수

- 법적근거 : 산림법 제6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 해제기준 : 편입불가
 - < 해제할 수 있는 조건 >
 -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철도·기상관측·관개수로·고속도로·일반국도·항만 및 항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발전·통신 또는 방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 때
- 해제권자 : 시장·군수

사. 보안림

- 법적근거 : 산림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1조의2
- 해제기준 : 편입불가
 - < 해제할 수 있는 조건 : 불임1의 내용과 같음 >
- 해제권자 : 시장·군수

아. 공유임야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84조, 제95조
- 해제기준 : 행정재산→편입불가
 잡종재산→관리계획수립→의회의결→매각
- 협의권자 : 도유임야 → 도지사
 시·군유임야→해당 시장군수

<붙임 1> : 보안림의 지정해제 및 기준

《산림법 제57조의 규정 : 보안림의 지정해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안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안림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학교시설·농로시설·주요산업시설 또는 군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산림법시행령 제51조의2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4. 농업·임업·어업·광업이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토사유출등의 방지 또는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으로서 그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고 온천개발 또는 토석채취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6.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의 경우 10헥타르이상, 기타 보안림의 경우 3헥타르이상을 8년이상 소유한 산림소유자가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부지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산림법시행령 제51조2의 : 보안림의 지정해제기준》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농지 또는 초지조성의 경우에는 경사도 21도미만으로서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수원함양목적의 보안림 (제2종수원함양보안림에 한한다)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에 한한다.
 - 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 다. 광업법에 의한 광업에 필요한 용지
2. 농업인들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의 유출·붕괴방지목적의 보안림 또는 풍치보존목적의 보안림으로서 철도변·주요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산림에 한한다.
 - 가. 농가주택 개량시설
 - 나. 농·임업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 다. 농막·벼섯재배시설 및 농림수산물 저장시설
3. 농업인들이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어류의 유치·증식목적의 보안림중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지 아니한 곳에 육상어류 양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5.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한 경내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7.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IV. 문화재 보호물 · 구역 해제 협의

1.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가. 개 요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제74조, 제74조의2 등
- 목적 : 각종 건설공사 시행 전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유물, 특히 매장문화재의 분포여부를 조사하여 보존대책 수립
- 대상 : 유형문화재(매장문화재, 건조물, 천연기념물, 고문서 등), 무형문화재(의식주, 풍속, 전설, 방언 등) 전반
-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나. 지표조사 대상범위

- 사업면적이 3만m²이상인 건설공사
- 사업면적이 3만m²이하이나 지하채장이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
 - 문화유적 분포지역 및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 각종 학술문헌에 유적이 분포한다고 기재된 지역
 -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지역

다. 업무 처리과정

- 사업시행자가 직접 지표조사기관과 계약하여 보고서 작성, 제출→시·군 및 도 경우→문화재청 검토(필요시 현장확인)→검토결과 통보→도 및 시·군 경우→사업시행자
-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의 중요성에 따라 문화재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시행 등을 통보
- ※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매장문화재)은 발굴조사 실시

2. 문화재보존에 미치는지 영향 검토

가. 개 요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31조 등
-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나.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범위

- 문화재보호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다음의 경우는 거리에 관계없이 영향검토를 하여야 함
 -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다. 업무 처리과정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시·군 검토(필요시 현장확인)→검토결과 통보→사업시행자
- ※ 검토 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하여 허가(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를 받아야 함

V. 무연분묘의 개장

3.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가. 개요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29조 등
- 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 시기 : 사업계획 수립시

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대상

-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검토 결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건설공사
- 국가·도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세부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8조의2 참조)

다. 업무 처리과정

- 국가지정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군 및 도 경유→문화재청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등)→검토결과 통보→도 및 시·군 경유→사업시행자
- 도 지정 :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사·군 경유→도 검토(문화재위원회 심의 등)→검토결과 통보→사·군 경유→사업시행자
- ※ 문화재청 및 도 검토 결과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문화재위원회 심의 등)될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1. 무연분묘 개장광고

- 개장 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공고방법

-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기 2월전
-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
-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후 공고

3. 개장절차

- 관할 시장·군수에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개장

4. 매장 및 안치

- 해당 시·군의 공설묘지에 매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
- 납골한 유골의 연고자가 그 확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무연분묘 개장시 유의사항

- 연고자가 나타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분묘 개장 전·중·후의 사진촬영 및 보존
- 매장시 비석에 “○○사업으로 ○○에서 이장한 분묘” 등을 표시하고, 신문·공고문 등 무연분묘 개장관련 일체의 서류 보존

VI. 환경영향평가협의

1. 환경영향평가 의의 및 목적

-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이 필요함
-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 뿐만아니라 환경적 요인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계획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골프장 건설 등 사업특성상 자연환경·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 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 등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매립사업·댐건설 등 환경영향이 장기적·복합적으로 발생하여 쉽게 예측이 곤란한 사업
 - 택지·공단조성 등 대가·수질오염 등 복합적 환경오염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
- ※ 골프장 : 부지면적이 25만㎡이상인 사업

3. 평가항목 및 분야

- 환경영향평가항목은 3개 평가분야에 걸쳐 23개로 구성되었음.
-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환경영향을 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은 교통항목으로 함)

평가분야	평가항목
① 자연환경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해양환경, 수리·수문(5개)
② 생활환경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전파장애, 일조장애,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11개)
③ 사회·경제환경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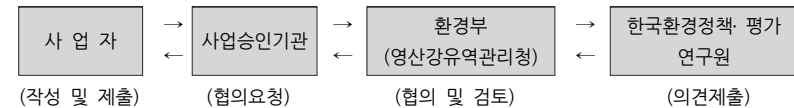
4. 평가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자가 작성.
- 사업자는 우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 및 공람(30일 이상 50일이내)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평가서 작성시 반영(미반영시는 사유 기재).
- 평가서 작성은 23개 평가항목에 대한 다종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자는 평가서 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를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된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5. 평가서 협의

-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는 사업승인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승인기관에 의하여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요청
-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시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내용)를 사업승인기관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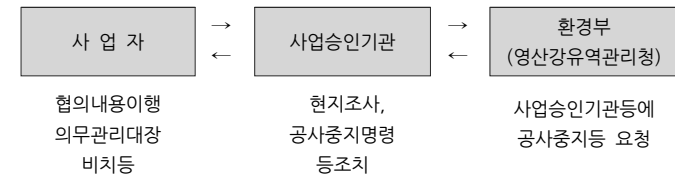
평가서 제출 및 협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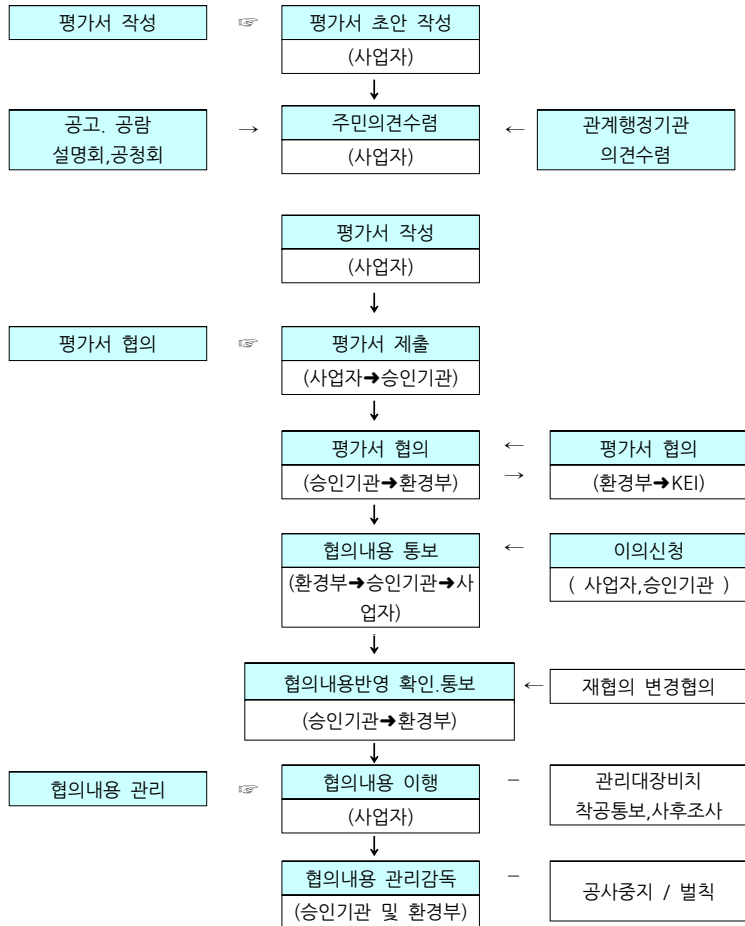
6. 협의내용 관리

-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으로 확정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협의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됨
-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승인기관은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 지방환경관서(영산강유역환경청)는 사업자나 사업승인기관에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의내용관리체계



7. 환경영향평가절차도



VII.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1.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의의

- 각종 개발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타당성조사 등 계획 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 즉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도입된 제도임
- 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사업을 인가·허가·승인·지정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미리 협의하여야 함

2. 구비서류(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적용대상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2 및 별표 3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나. 구비서류의 종류

【공동구비서류】

-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포함
-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
 - 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 대상지역안의 생태계보전지역 등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
 - 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개별 구비서류】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 대상지역의 식생,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 대상지역의 축척 1:25,000인 위치도
 - 대상지역의 축척 1:3,000 내지 1: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 기타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3. 협의 기관 및 기간

가. 협의 기관

-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계획을 수립 또는 확정하는 자, 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
-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경우 지방환경

관서(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VIII. 조수보호구역 해제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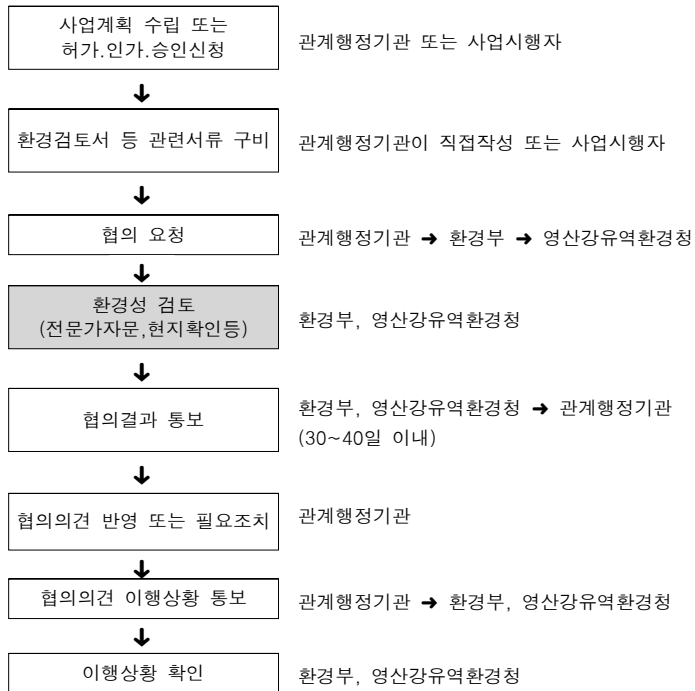
나. 협의 기간

- 원칙적으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결과 통보
 -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 10일 연장 가능
- ※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한 것으로 간주

4. 협의 절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의 지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승인·인가허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 환경성검토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영산강유역환경청)의 장에게 미리 협의 요청
- 협의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환경성을 검토하여 30일~40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협의요청기관에 통보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절차



1. 조수보호구 지정

- 지정근거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
- 지정대상 : 조수의 보호와 번식을 위해 필요한 지역
-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 시도지사(시장군수위임) -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외 지역
- 지정절차 : 토지소유자 등 의견수렴→지정·고시
 - ※ 해제시 다음 사항을 고시
 - 조수보호구 이름, 구역, 설정연월일, 해제사유, 해제년월일
- 지정현황 : 53개소 6,326ha(산림 5,438, 농경지 37, 기타 851)
- 행위제한
 - 조수번식기는 출입금지 (필요시 지정권자의 사전허가)
 - 이용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지정권자의 의견수렴

2. 조수보호구 해제

- 조수보호구 해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 제8항)
 -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 할 때

3. 조수보호구안에서의 이용·개발 행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 조수보호구안에서 다른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개발 등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조수보호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IX. 교통영향평가

1. 평가개요

- 근거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심의내용
 - 진·출입 동선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 보행 및 교차로 교통개선 대책
 - 주차수요 예측, 대중교통, 공사, 교통처리 방안 등
- 작성 및 심의
 - 작성 : 사업시행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전문업체에 의뢰
 - 심의 : 사업, 시설 규모에 따라 중앙심의 및 지방심으로 구분
 - ※ 협의(처리)기간 : 45일 이내(필요시 15일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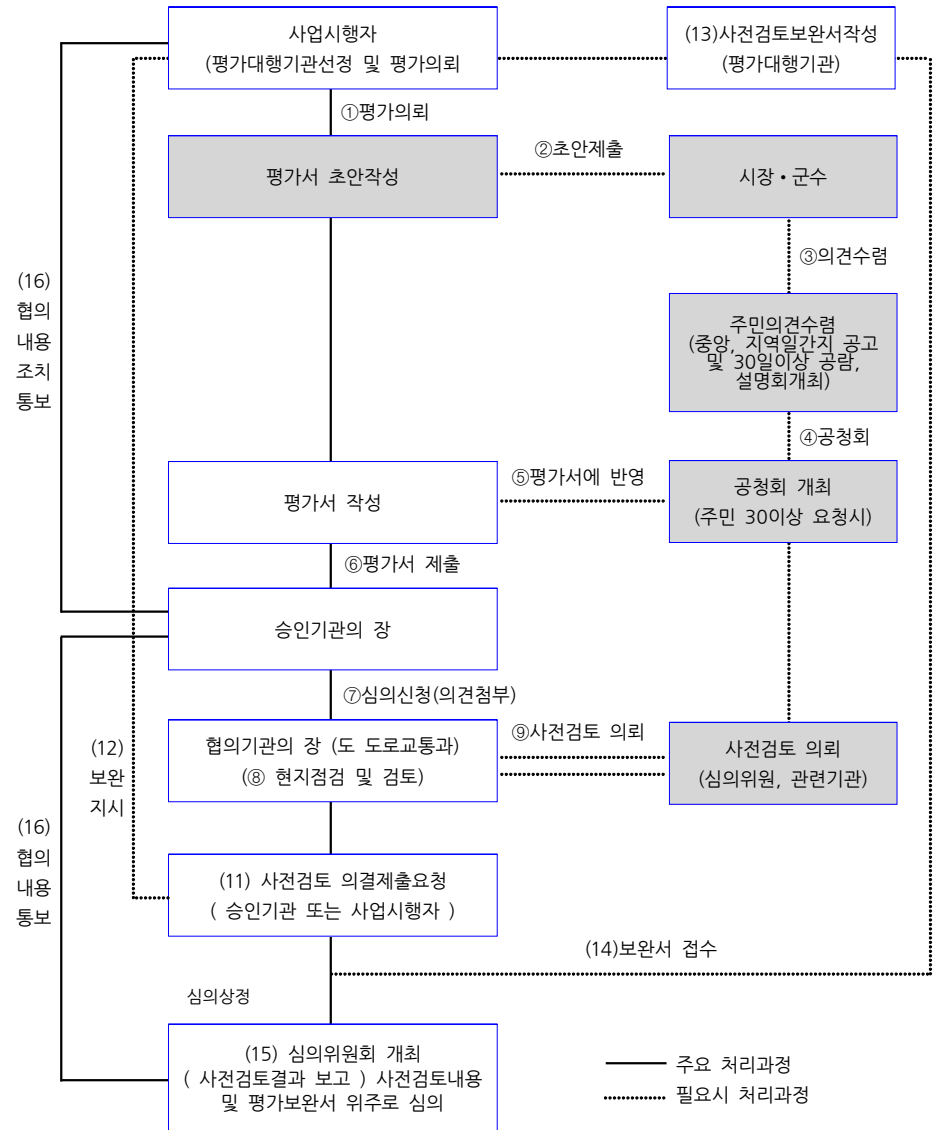
2. 심의대상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 시설의 설치공사
 - 중앙교통영향심의위 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 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3. 전라남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 위원수 : 40명(당연5, 위촉35) - 위원장 : 도 건설교통국장
- 위원회 운영 : 위원장이 회의시마다 지명하는 10인 위원으로 구성 심의

4.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X. 지방재해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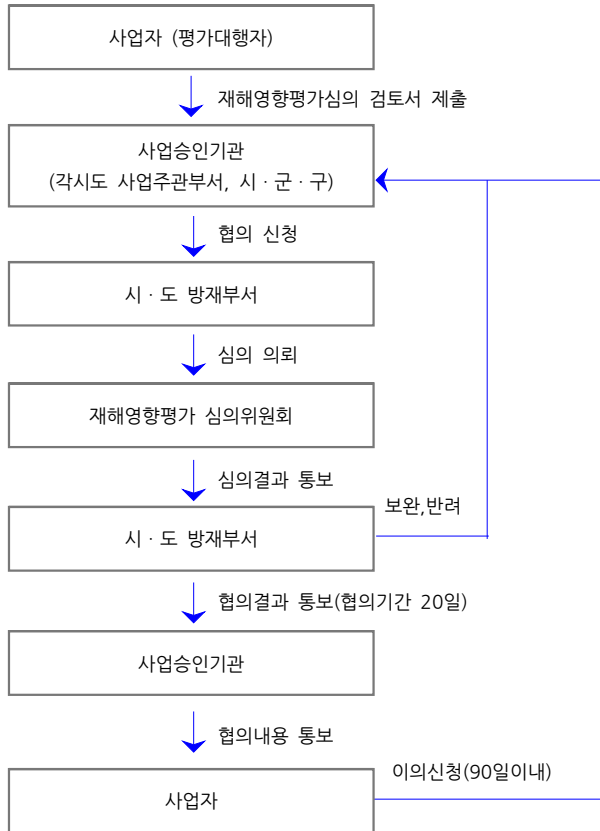
1. 지방재해영향평가근거

-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4조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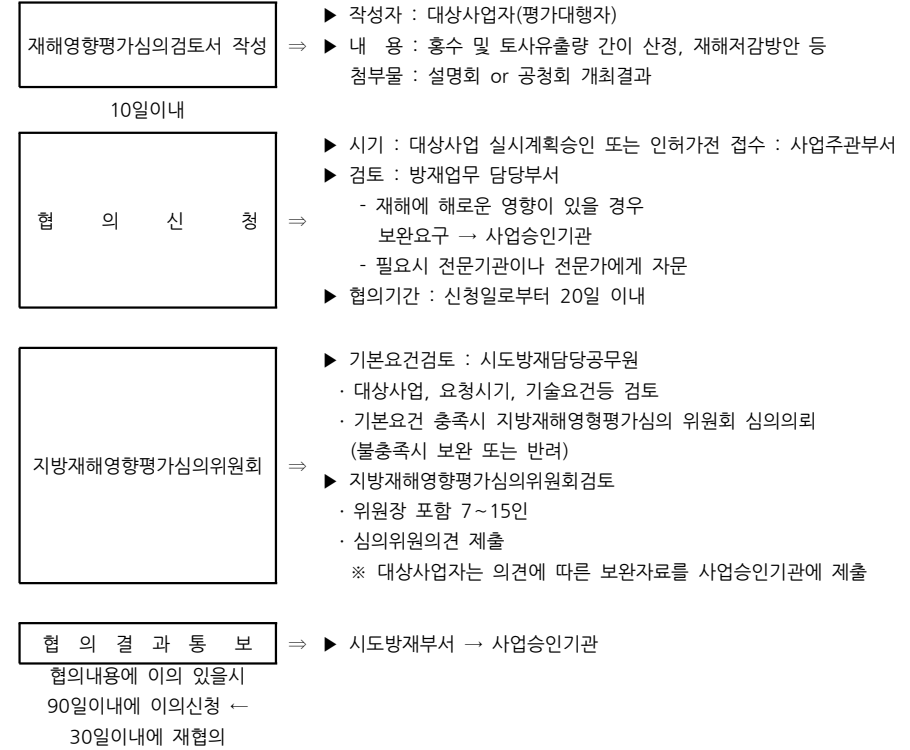
2. 대상사업 및 규모

- 18홀이상 골프장

3. 재해영향평가 심의절차도



4. 심의방법



[참고] 실과별 처리민원

실과별	협의 및 인허가 내용	관련 법규
투자진흥과	국대외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지원	국대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
회계과	국·공유재산 매입·임차	국유재산관리법, 지방재정법
관광진흥과	권역계획 변경	관광진흥법
관광개발과	관광(단)지 지정	관광진흥법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문화예술과	문화재 보호물·보호구역 해제 협의	문화재보호법
체육청소년과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사회복지과	무연분묘개장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
농업기반과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법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축정과	초지전용허가협의	초지법
산림과	보전임지 전용·산림 형질변경	산림법
해양수산정책과	수산자원보전지구 해제 협의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매립법
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환경정책기본법
	생태계보전지역 해제 협의	자연환경보전법
	조수보호구역 해제 협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공원사업시행, 공원시설 점·사용허가	자연공원법
수질해양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신고	폐기물관리법
	상수도관련 인가 및 급수공사	
지역계획과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수도법
	하수도관련 인가 및 허가	
도로교통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국토의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
	교통영향평가 협의	
개발건축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연결도로 허가, 도로점용허가, 접도구역관리	
재난재해관리과	도로법	도로법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 허가·신고	
	건축법	
지적과	지방재해영향평가 협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폐천부지양여	
	하천법	
지적과	지방1,2급하천 점·사용허가	하천법
	소하천공사 관련 허가	
지적과	소하천경비법	소하천경비법
지적과	공공측량성과 사용심사	측량법

제3장 골프장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규

1. 골프장 체육시설 인·허가 세부 일정

기간 공종	과업기간 (개월)												비고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1. 현황측량 (항공측량)	■													
2.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		■												
3. 환경, 교통성 검토					■									
4. 문화재 지표조사	■													
5. 입목조사 / 지하수영향조사		■												
6. 기본 설계			■											
7. 도시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										
8. 지질 조사						■								
9. 사업시행자 지정							■							
10. 환경영향평가								■						
11. 교통영향평가									■					
12. 재해영향평가										■				
13. 실시 설계											■			
14. 사업계획승인												■		
15. 실시계획인가													■	
16. 개별허가승인														■
17. 착공														■

■ 골프장 체육시설 관련법규 검토 ■

-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中 체육시설
- 2)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3)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 4)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보전임지전용협의기준)
- 5) 환경 관련 법규
- 6) 기타 관련 사항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中 체육시설

구분	설치기준
제 99조 (체육시설)	9홀 이상의 골프장은 체육시설임
제 100조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종전용주거지역·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3km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2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태로 보전할 것.
제 101조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m 이하로 하고, 5m 이하의 소단을 조성할 것
	체육시설용지는 60% 미만으로 할 것
	녹지용지는 40% 이상으로 할 것.
	건축시설용지는 5% 미만으로 할 것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 그 밖에 폭 10m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 전체부지의 면적이 1km 미만인 경우 : 폭 8m 이상 - 전체부지의 면적이 1km 이상인 경우 : 폭 10m 이상
	부지내 도로는 폭 4m 이상으로 계획할 것.
	상수도시설은 1인1일 기준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하수는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폐기물 발생시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단, 위탁처리시 제외. 주차장 등 그 밖의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설치기준	검토내용
시행령별표 3 (설치금지 시설물)	<p>동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거 골프장안에서의 공중위생법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숙박시설을 설치할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경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 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 -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 (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 한한다) -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 - 골프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BOD 5mg/l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과 낚시매장을 함께 설치 할 경우에는 슬로프면적이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p>클럽하우스"라 함은 골프장부지안의 건축물로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복도, 계단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관리·운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카트고, 수위실, 중장비고, 경비고, 창고, 가설건축물, 태양열이용설비, 상수저장탱크, 소각장,오수처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골프코스 사이의 휴게소, 실내주차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의 기준은 다음과 규모제한 같으며, 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가) 9홀미만 : 500㎡이하 (나) 9홀이상 18홀미만 : 600㎡이하 (다) 18홀 : 3,300㎡이하 (라)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 3,300㎡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를 추가한 면적이하</p>	
시행령별표 3 부지규모제한	<p>골프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1) 6홀미만 : 60,000㎡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3,000㎡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2) 6홀이상 9홀미만 : 340,000㎡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5,000㎡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3) 9홀이상 18홀미만 : 500,000㎡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0,000㎡를 추가한 면적 (4) 18홀이상 : 1,080,000㎡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8,000㎡의 면적을 면적 ※부지면적 6홀 60,000㎡이하/ 9홀 500,000㎡이하/ 18홀 1,080,000㎡이하/ 27홀 1,548,000㎡이하/ 36홀 2,016,000㎡이하</p>	

4.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구 분	골프장 입지 불가지역	검토내용
제 2조 (입지기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20km, 일반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10km,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의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효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 별대책지역안에 위치한 경우 - 도를 기준으로 총골프장 면적이 총임야면적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40% 미만인 경우(사업 지내 산림 및 수림지가 전 무할 경우는 예외) - 사업지내의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미만인 경우(사업지내 원형보전지가 전무할 경우는 예외) 	

5.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보전임지전용협의기준)

구 분	편 입 기 준
보전임지	<p>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2. 시, 군 종합계획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3. 해당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 사업 계획지
조림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	편입산림면적의 20퍼센트(산업단지, 택지, 집단묘지,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입업진흥구역	<p>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편입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지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 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된 입업진흥권을 일부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 수행 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요존국유림	편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편입면적이 3헥타르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불요존국유림 및 공유림	<p>불요존 국유림과 공유림을 합한 면적(다만,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 유림을 매수하여 불요존 국유림 또는 공유림이 늘어난 경우 그 면 적은 제외)이 사업계획지 총면적의 20퍼센트 미만으로서 20헥타르 이하(산업단지, 택지, 집단묘지, 대중골프장의 경우에는 총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서 30헥타르 이하)인 경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지안에 위치하거나 진입로 개설예정지에 위치하여 목적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된 국,공유림을 편입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환경 관련 법규

구 분	현 황	비 고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대기환경규제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수 변 구 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을 제4조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
백두대간의 생태축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국립공원(도립공원)		
습지보전지역		
생태자연도(녹지자연도)		
상수원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7. 기타 관련 사항

구 분	현 황	비 고
환경영향평가		부지면적 250,000㎡ 이상
교통영향평가		부지면적 150,000㎡ 이상
재해영향평가		부지면적 300,000㎡ 이상 (골프장인 경우는 18홀이상,9홀 이상은 지방재해영향평가대상)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500m이내 불가
접 도 구 역		도로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역		해군기지법
기지역(고도제한)		군용항공기법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기타 관련사항		

8. 골프장 입지 법규 저촉사항 검토

법	항목	내용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규정	상수원 보호구역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 유하거리 20km 일반상수원 보호구역 상류방향 : 유하거리 10km 취수장의 상류방향 : 유하거리 15km이내 하류방향 : 유하거리 1km이내
	임야면적 기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 면적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거나 등록된 골프장업 시설의 부지면적)이 총 임야면적의5%를 초과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은 총 골프장 면적이 총 임야 면적의 3% (제주도 지역의 시·군은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허가 가능 대중 골프장은 3% (제주도는 4%)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 가능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방상수도의 상수도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부터 수계 상10km이내, 광역상수도의 상수도보호구역인 경우에는 20km이내인 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개발진흥지구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외의 시설이 입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림법에 의한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다만,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개발진흥지구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다만,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기지구역 다만, 군용항공기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부대장등 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 다만,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여건에 비추어 보아 개발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중 개발진흥지구	관리지역내 개발진흥지구 지정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인 지역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중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상기 하천에 유입되는 제1류 지천(나목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km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500m이내인 지역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100m 이내인 지역
		철도·고속철도·고속국도(계획을 포함)의 경계에서 500m이내에 있는 지역 다만, 시장·군수 등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전략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습침수지역 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광역시장·도지사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도시관리 계획수립 지침 중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산림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산림 가. 보안림·채종림·시험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 나.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산림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다. 보호수·수형목 및 회귀 동·식물서식지 및 동시행령 제91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는 산림 1.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2.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등 자연경관 보존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3.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지역 4.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발행이 우려되는 지역
		토지의 50% 이상이 보전임지인 지역(스키장·대중골프장사업계획지, 도시기본계획 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및 해당지역이 당해 시·군의 다른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계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목축적이 최근 임업통계연보에 의한 당해 시·군·구 평균의 150%이상인 경우 (스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하지 아니하다.)
※ 다만, 제주도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설치 기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경사도가 30도 미만 - 표고가 산자락 하단을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형질을 변경 불가. 발생하는 경사면의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되, 5미터 이하의 소단(폭1m이상)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가급적 지구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함.
산림법	편입금지 산림	보안림 · 채종림 · 시험림 · 천연보호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산림과 형질변경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산림 요존 국유림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보전임지의 면적이 사업부지의 총면적의 50% 이내 (단, 스키장 · 집단묘지 ·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지, 시 · 군 종합계획등에 반영된 개발사업계획지, 해당지역이 당해 시 · 군의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낙후되어 지역주민이 개발을 요구하는 개발사업 계획지의 경우는 예외)
	불요존 국유림과 공유림 편입비율이 총 면적의 20% 이내 또는 20ha 이내 필요 조림성공지가 회원제 및 정규대중 골프장은 전체 임야면적의 20% 이하 일반대중 및 간이 골프장은 30% 이하인 경우 (단, 실제훼손되는 조림성공지 면적이 상기 비율 이내이면 예외 인정)	
환경 관련법	협의 불가	8등급지 (환경부 녹지자연도 기준, 1993) ※ 실사조사를 통해 재확인을 요함.
연안 관리법		연안통합관리지역 저축 여부

제4장 Summary

I. 법령 및 타당성 검토

1. 사업의 타당성과 적용해야 할 법령검토

- 개발사업의 복합적(경제적, 기술적, 법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동산 공법에 의한 사업의 허용여부를 검토

① 체육시설의 구분

-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로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골프장사업은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

2. 개발행위 허가/용도지역 · 지구별 건축제한

①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 대통령령 : 골프장은 운동시설로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생산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 조 레 : 일반주거지역, 중심 ·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

3.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 골프장사업의 입지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및 용도지역 · 지구별 건축제한에 적합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도시관리계획변경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계획관리지역

II. 사업계획 승인

1.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

-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골프장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함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 :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 총용지면적 25만㎡ 이상

② 교통영향평가 대상

- 중앙교통영향 심의회의 심의 : 체육시설의 설치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 심의회의 심의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2.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법상의 체육시설 중 공공용 시설 또는 골프장(9홀이상)을 말함
 - ① 운동장의 결정기준 : 주요시설물 주변이나 인구밀집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운 위치로서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제1종 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 ③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골프장설치 승인
 -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설치 추진배경
 - ⇒ 2001년과 2002년도에 걸쳐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설치 관련 법적제도장치 마련
 -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쓰레기 매립장, 토취장, 목장부지 등과 같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적은 지역을 활용하여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민에게 체육공간을 제공
 - 그린벨트구역 입지기준(개발제한구역법령집 제4조의 2)
 - ⇒ 경사도 15도 이상이 사업계획면적의 50% 이내, 25도 이상 30%이내 / 절·성토 높이가 15m 이내
 - ⇒ 다음 합한 면적이 사업계획면적의 60% 이상
 - 원형으로 보전되는 임야면적 / 쓰레기 매립지·토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훼손된 면적 / 골프코스 가 조성되는 면적 외의 사업계획면적 중 수목식재에 의하여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 골프코스 안에 연못으로 조성되는 면적 / 잡종지, 나대지 그밖의 이와 유사한 토지의 면적
 - 그린벨트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 ⇒ 도시관리계획변경 요청 ⇒ 현황등기 기초조사(시장·군수) ⇒ 주민의견수렴/관리계획(안)수립요청(시장·군수→도지사) ⇒ 관리계획(안) 수립 / 관계부서 협의(도지사) ⇒ 관리계획(안)확정(도지사)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지사) ⇒ 관리계획 승인신청(도지사 → 국토해양부) ⇒ 중앙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토해양부) ⇒ 관리계획 승인(국토해양부) ⇒ 관리계획공고/일반인에게 공람(시장·군수)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
 - ④ 골프장개발 불가능 지역
 - 개발제한구역 : 제한적 허용(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며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체육시설(골프장)의 설치가 가능
 - 자연생태 보존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 → 부대장 협의시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 → 보호구역해제시 가능 / 특정야생 동·식물보호구역 / 문화관광부 및 산림청 규정에 의한 제한

3.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시설결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1) 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할 것 / 그 기능에 따라 관중석,관리시설,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 (2)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 토지면적의 형질변경 기준 : 경사도(30도 미만 : 표고→ 산자락 하단 기준으로 300m 이하인 지역) / 산정부근

- 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불가 / 법면의 높이 30m 이하
- 체육시설의 부지구획
 - 가. 체육시설용지 : 지구면적의 60%미만 / 나. 건축시설용지 : 지구면적의 5% 미만 / 다. 녹지용지 : 지구면적의 40%이상 / 라. 공공시설용지 : 주차장, 도로, 환경오염방지사설 설치
-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 가. 지구의 경계에서 10m 이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
 - 지구면적이 1㎢ 미만 : 폭 8m 이상의 진입도로
 - 지구면적이 1㎢ 이상 : 폭 10m 이상의 진입도로
 - 나. 부지내 도로 : 폭 4m이상
 - 다. 상수도 시설 : 최대수용인원에 대하여 1일 기준으로 1인당 150ℓ 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
 - 라. 하수시설 :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 설치
 - 마. 폐기물처리시설 : 소각장을 포함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혹은 위탁처리
 - 바. 주차장 등 기타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4.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1)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2)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

- a. 골프장업의 시설물의 설치제한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의 시설물 설치금지, 단,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인 거으로서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공원(자연공원법) 등이 아닐 것,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일정한 거리가내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b. 골프장업의 시설물의 규모제한(폐지) : 클럽하우스의 연면적
- c. 골프장의 부지면적 제한(폐지)

▶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 a. 공통기준
 - 가. 필수시설 :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급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
 - 나. 임의시설 : 편의시설(관람석, 체육용품판매점,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운동시설(해당체육시설외의 다른종류의 체육시설)
- b.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운동시설 기준)
 - 가. 골프코스의 홀수 :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 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은 9홀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이상 9홀 미만
 - 나. 골프코스의 총 길이기준 : 18홀 골프장은 6,000m, 9홀인 골프장은 3,000m, 6홀인 골프장은 2,000m
 - 다. 골프코스의 시설 : 티그라운드, 웨어웨이, 그린, 라프, 장애물, 홀컵 등

5. 체육시설업의 사전계획 승인신청

- ①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첨부서류
 - ①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②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 ③ 토지명세서
 - ④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⑤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1/25,000이상)
 - ⑥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1/3,000 이상으로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⑦ 시설배치 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한다)
 - ⑧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 ⑨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 ⑩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 ⑪ 운영계획서(체육지도사배치, 보험가입등)
 - ⑫ 인·허가 의제사항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 협의

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7. 사업계획승인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타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와 별도의 인허가

- ① 타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
 -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 ※ 인·허가 의제사항
 - ① 농지전용허가
 - ② 산지전용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 ③ 도로점용의 허가
 - ④ 초지전용 허가
 - ⑤ 하천점용등의 허가
 - ⑥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 ⑦ 사도개설의 허가
 - ⑧ 사방지 지정의 해제
 - ⑨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별도의 인·허가 사항
 - ① 건축허가
 - ② 전용수도 허가
 - ③ 분묘개장·이장 허가
 - ④ 국유림 대부허가
 - ⑤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⑥ 기타수질 오염원 설치신고

9. 사업계획승인 제한

- ①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㉓ 대중골프장으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등록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 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부지면적을 증가함이 없이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10. 회원모집

- ① 회원모집시기
 -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는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공사 공정율이 30% 이상 진행된 후 모집개시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사업계획승인후 설치공사 착수전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② 회원모집 방법·절차
 - ㉓ 원칙 : 공개모집(일간신문에 모집 공고, 10일 이상 신청기간)
 - ㉔ 예외 : 회원탈퇴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거나 또는 공개모집 후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모집을 할 수 있다.
- ③ 회원모집상황 보고
 - 회원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모집인원과 모집금액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의 보호
 - ㉓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제한없이 양도할 수 있다.
 - ㉔ 회원의 탈퇴, 입회금의 반환, 입회금의 반환시기
 -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에 가입한 이후 회원의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입회금의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㉕ 회원증의 확인·발급 ; 입회일로부터 30일 이내(양수회원도 동일)

- ㉔ 회원의 대표기구 :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⑤ 회원모집계획서 첨부서류
 - ㉔ 회원모집약관(모집계획 총인원 명시)
 - ㉔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
- ⑥ 회원모집계획서 제출기관
 - ㉔ 등록체육시설업 : 시·도지사
 - ㉔ 신고 체육시설업 : 시장·군수·구청장

11. 대중골프장의 병설

- ①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하는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설대중 골프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대중골프장 규모
 - 18홀인 회원제 골프장 : 6홀 이상 대중골프장
 - 18홀 초과 회원제 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 ③ 대중골프장의 중공기한
 - ㉔ 원칙 :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 이전까지
 - ㉔ 예외 :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 신청 당시 병설 대중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중골프장의 중공기한을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④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금액
 - 홀당 5억원
- ⑤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시기
 - ㉔ 원칙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1차 회원모집 계획서 제출시 및 등록시에 각각 1/3씩 현금으로 예치
 - ㉔ 예외 : 1차분 조성비를 사업계획 승인시에 예치한 때에는 2차, 3차분 조성비의 예치시기를 회원제 골프장의 등록일로부터 1년 6개월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이자도 함께 예치, 이자는 은행의 대출금리 적용)
- ⑥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 조성비 관리기관(한국골프장 사업협회)은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대중골프장 조성비를(이자 포함) 이관하여야 한다.

Ⅲ. 골프코스 등의 조성 및 건축물의 건축 (체육시설의 설치)

- 사업시행자(체육시설업자)는 골프장업의 시설기준, 시설물의 설치 및 골프코스 등을 조성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IV. 골프장업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

1. 회원제 골프장업 토지 및 건축물의 구분등록 신청

- ①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일정한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토지 및 건축물의 구분등록 신청
 - ㉔ 골프코스(티그라운드, 웨어웨이, 라프, 해저드, 그린 등 포함)
 - ㉔ 주차장 및 도로
 - ㉔ 조정지
 - ㉔ 조정지(산지·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
 - ㉔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등)
 - ㉔ 보수용 잔디, 묘목, 화훼재배지 등

2.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청

- 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자가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등에 따라 시설(골프코스 등)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인·허가 의제사항
 - ① 부동산등기부등본 ② 시설물의평면도 및 배치도
 - ③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3. 등 록

- 시·도지사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 등록부에 기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

- 시·도지사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자가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일정한 규모이상을 갖춘 때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 ① 조건부 등록의 대상규모
 - 골프장업의 조건등록
 - ㉔ 회원제 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
 - ㉔ 필수시설(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
- ② 조건부 등록의 기간 : 당해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6년이내)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5. 사업자 등록과 골프장 영업개시(체육시설 영업개시)

-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골프장 영업을 개시한다.

▶ **체육시설업의 구분 및 종류**

	등록체육시설업	신고체육시설업
대분류	골프장업·스키장업·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차량자동차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체육도장업·물리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당구장업·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세분류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 **골프장업의 시설물 및 부지의 제한사항**

구분	세부내용
설치금지 시설물	<p>골프장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p> <p>(2)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4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30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효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p> <p>(3)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p> <p>(4)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 한한다)</p> <p>(5)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p> <p>(6) 골프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800 5mg/l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7)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과 눈썰매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슬로프면적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8)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할것</p>
시설물의 규모제한	<p>(1) 클럽하우스의 연면적은 다음의 기준을 다음과 같고, 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p> <p>(가) 9홀미만의 골프장: 500제곱미터이하</p> <p>(나)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600제곱미터이하</p> <p>(다) 18홀의 골프장: 3,3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내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라)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 3,300제곱미터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이하로 하되,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이 클럽 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내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p> <p>(마) 20이상의 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 내지 (라)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골프장이 설치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의 연면적을합한 면적이하</p>
부지면적제한	<p>골프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p> <p>(1) 6홀미만의 골프장: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p> <p>(2)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p> <p>(3)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p> <p>(4) 18홀이상의 골프장: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8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p>

비 고 : "클럽하우스"라 함은 골프장부지안의 건축물로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복도, 계단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관리·운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카트고, 샤워실, 중장비고, 경비고, 창고, 가설건축물, 태양열이용설비, 상수저장탱크, 소각장, 오수처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골프코스 사이의 휴게소, 실내주차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골프장업의 시설기준**

구분	세부내용
운동시설	<p>○ 회원제골프장업 및 정규대중골프장업은 18홀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은 9홀이상 18홀미만, 간이골프장업은3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p> <p>○ 각 골프코스는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길이·폭 및 파수에 적합하여야 하되, 각 골프코스의 길이를 향한 총길이는 18홀인 골프장은 6,000미터, 9홀인 골프장은 3,000미터, 6홀인 골프장은 2,000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퍼센트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p> <p>○ 각 골프코스의 사이중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만이 20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p> <p>○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헤어웨이·그린·라프·장애물·홀클딩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 골프용구 운반기구를 갖추고 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p>
관리시설	○ 골프코스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 **골프장업의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구분	배치인원
골프코스 18홀이상 ~ 36홀 이하	1인 이상
골프코스 36홀 초과	2인 이상

▶ **골프장업의 안전/위생기준**

구분	세부내용
공통기준	<p>(1) 체육시설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p> <p>(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3)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4) 체육시설업의 해당체육종목의 특성을 참작하여 음주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p> <p>(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p>
세부기준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재배·병해충방제·체육활동에 적합하게 예초,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이하인 골프장에는 1인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골프장업의 등록체육시설업 이후 6년 이내에 설치공사를 착수하여 준공하여야 함**

▶ **골프장업의 회원모집 :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 회원모집 가능**

가. 사전 회원모집 개시일 15일 전까지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나. 회원모집계획서 내용 : 회원의 종류 / 회원수 / 모집시기 / 모집방법 / 모집절차 / 회원모집총금액
다.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 이상 진행된 이후에 가능함

▶ **대중골프장의 병설**

가.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함

규 모	대중골프장 병설규모
18홀인 회원제 골프장	6홀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 골프장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개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대중골프장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병설하지 못할 경우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함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에 예치하여야 함

다.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기준[5억원]

라. 예치시기

- (1) 1차분 : 사업계획승인시
- (2) 2차분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 (3) 3차분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 (4) 예치금액 : 대중골프장 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 현금으로 예치 / 제2차 및 3차분은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일로부터 18개월 연기가능(이자부담)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 **대중골프장27홀 기준**

가. 대중골프장 직접 병설시 : 회원제는 18홀 / 대중골프장은 9홀

나. 대중골프장 병설을 안할시 : 9홀 x 5억원 = 45억원의 대중골프장 병설예치금을 예치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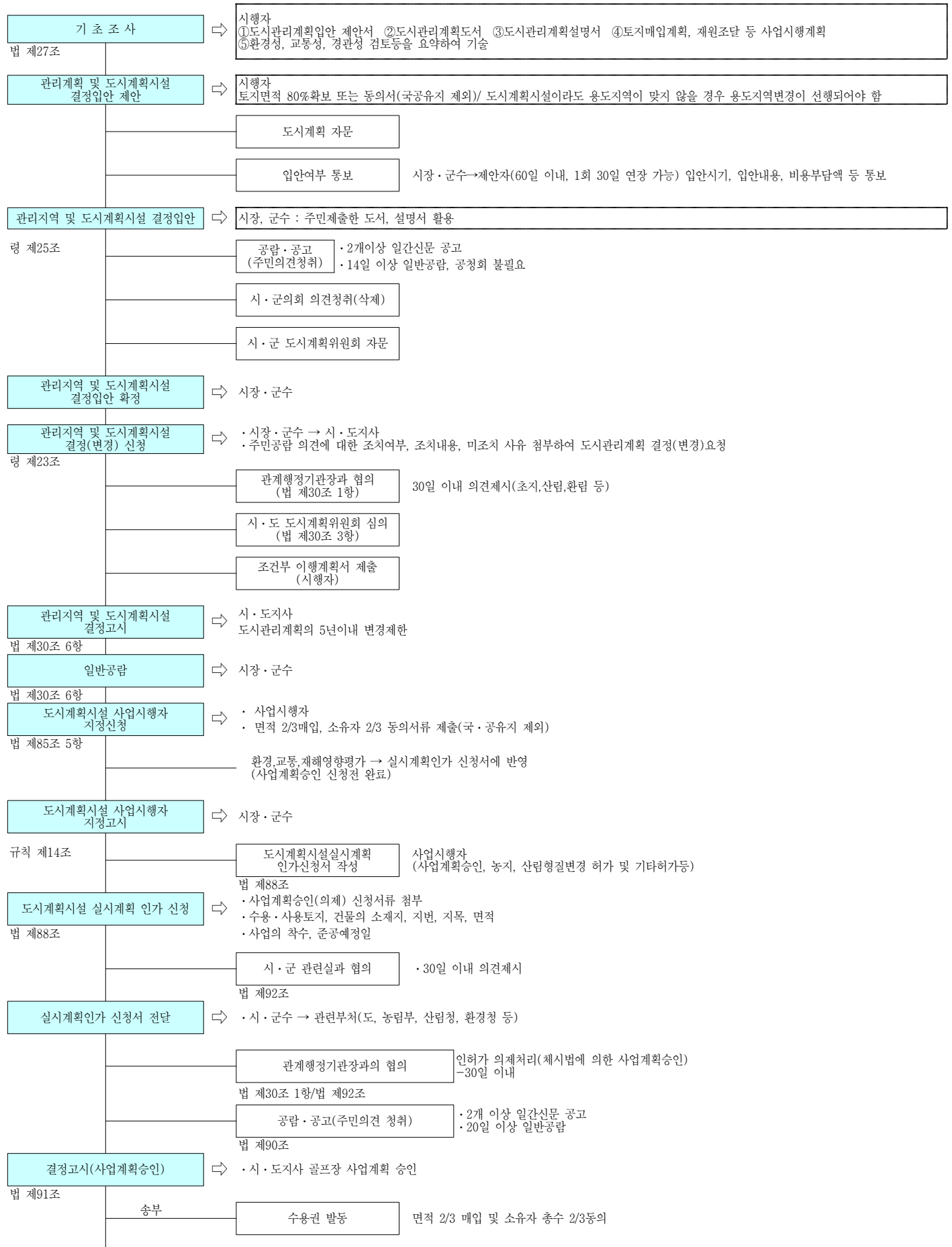
V. 골프장 개발사업의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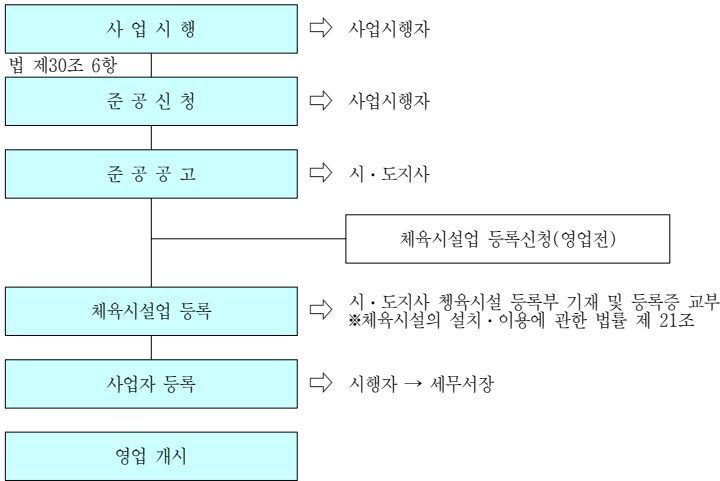
1. 추진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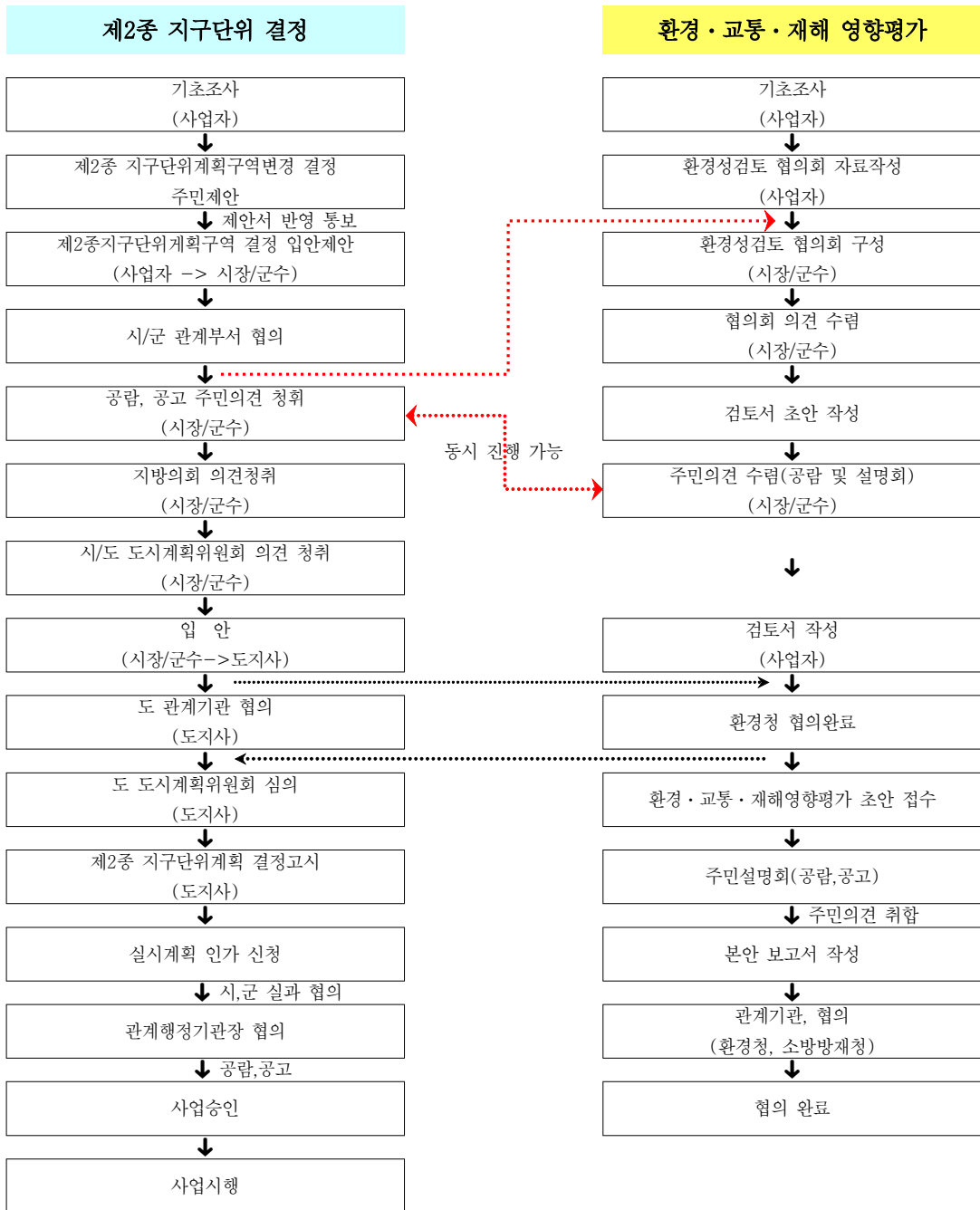
2. 골프장사업 세부추진 업무 Flow

(관련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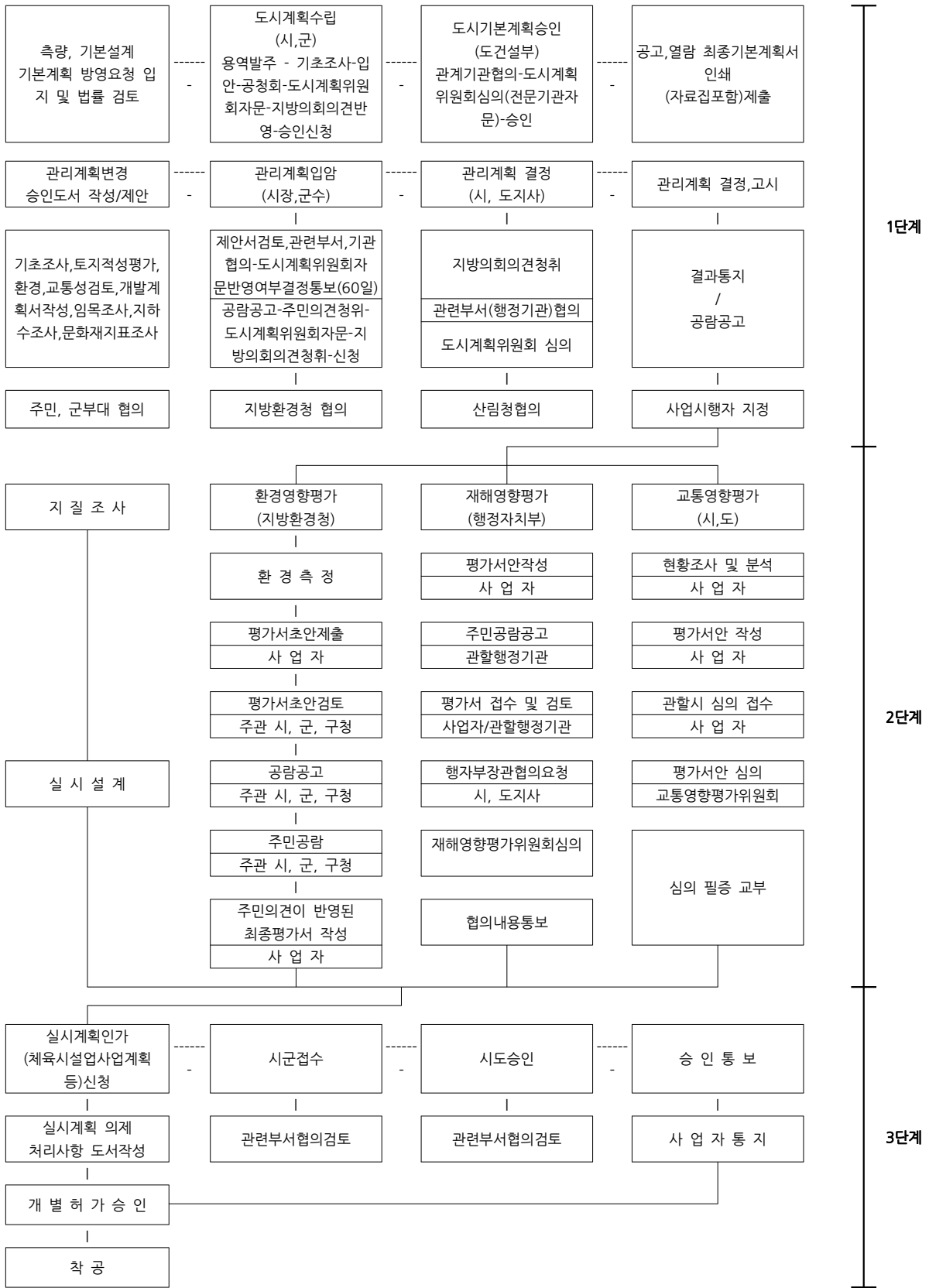




3. 제2종 지구단위 인허가 추진시 Flow



4. 골프장 체육시설 인허가 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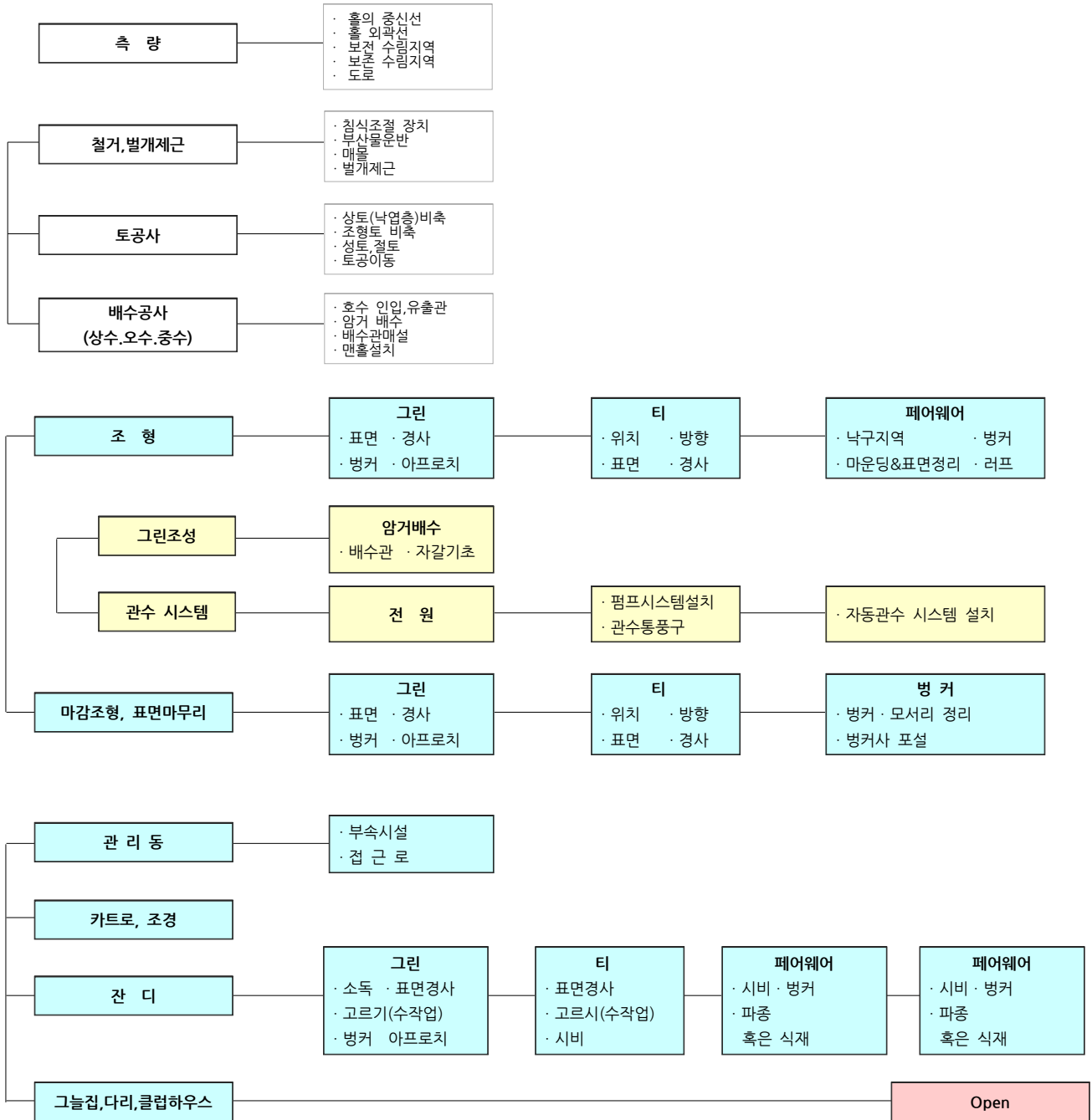


5. 골프장 설계

1) 디자인과정

개념도 → 홀배치 → 토공량산정 → 홀전략 → CAD → 마스트플랜 → 칼라링 → 칼라링완성 → 개념스케치 → 포토샵 → 3D작업

2) 설계과정



3) 시공과정

시공측량 → 표토제거 → 절, 성토, 적재운반 → 기반배수시설 → 석축구조물공 → 조형공사 → 벙커 배수시설 → 잔디파종(페어웨이) → 조경공사 → 완공



4)부지선정시 고려사항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위 치	골프장에 접근하는데 소요시간은 최악의 경우 1시간 30분 이내이어야 상업성이 있다.		
지 형 및 지세	①고저차	· 전체 고저차가 적을수록 좋다. 표고차가 100m 이내면 최고의 적지다. · 건설비가 적게 들고 훼손 부분이 적어서 완성 후 조형, 조경 등 매우 좋은 골프장이 된다.	
	②부지의 형상	· 경계선이 부지내부로 불쑥 들어오거나 밖으로 좁고 길게 튀어나가면 이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므로 등 글등글하여 모가 나지 않는 경계선이라야 전 토지 활용이 가능하다	
	③부지의 방향	· 가급적 남향이라야 잔디, 수목의 생육에 유리하며, 동절기에 기온의 영향이 내장객들에게도 온화하고, 눈도 빨리 녹아 개장일수가 증대되어 수입이 좋아지고 코스관리비가 절약된다.	
	④지형지물	· 조경에 가치를 부가하고 플레이에 흥미 유발 효과가 있도록 노출된 바위, 개천, 거목,연목 등 자연지 물이 있으면 더욱 좋다.	
	⑤토질	· 암반의 노도가 적어 발파암이 적어야 토공비가 절감된다.	
	⑥내부 및 주위 경관	· 부지 내부의 생김새와 주변의 경관이 탁월할수록 골프장의 효능과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⑦진입도로	· 신설하는 진입도로가 짧을수록 유리하므로 대로(국도, 지방도 등)로부터 가까워야 한다.	
	⑧동력 및 수원등급원	· 전력선 인입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 식수 및 잔디 관개용수원의 확보가 용이하여야 한다.(대부분 지하수로 해결 가능함)	
	⑨지표 상태	· 키가 큰 수목이 많을수록 조경비용이 절약되며 완성 후 좋은 경관이 확보된다.	
	⑩환경법에 저촉 여부	· 상수도원 등 환경영향평가에 걸려 사유가 없어야 한다	
투 자 비	▶ 투자비는 대상지의 지세, 지형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차이가 많아 대체적으로 코스 건설비로 실비 기 준하였을 때 다음과 같다. · 평지 : 홀당 약 13억원 · 이상적인 야산인 경우 : 홀당 약 15억원 · 산악지역 : 홀당 약 20억원 · 약산 지역 : 홀당 약 25억원	※ 총 소요 기간 : 약 3.5년~4년	
소 요 기 간	▶ 각 공종별 소요 기간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국토 계획 및 이용 변경 신청 : 6개월 · 사업승인신청(승인신청도서,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 : 1년 · 공사 기간 : 2년	※ 총 소요 기간 : 약 3.5년~4년	
참 고 자 료	①지형도 : 1/1,200 혹은 1/3,000의 축척 ②토지대장등본 : 필지별 ③토지등기부등본 : 필지별 ④지적도 : 필지별 ⑤기타 사업체 관련 서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07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을 말한다. 3.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p> <p>제3조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종목 및 시설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절한 설치 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영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체육시설의 종류)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p>	<p style="text-align: right;">[일부개정 2000.3.28 문화관광부령 제38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공체육시설</p> <p>제5조 (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p> <p>제6조 (생활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제7조 (직장체육시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공체육시설</p> <p>제3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전문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 1.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는 국제경기대회 및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2.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p> <p>제4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공공체육시설</p> <p>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4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1996.5.30, 2000.3.28>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2.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p>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p> <p>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 또는 직장운영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18></p> <p>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p> <p>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1. 시 군 구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외 체육시설</p> <p>2. 읍 면 동에는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p> <p>제5조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p> <p>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직장은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8></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p> <p>③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지도 감독한다. 다만,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지도 감독한다. <개정 1996.5.28></p>	<p>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다. 기타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p> <p>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p> <p>③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제5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p> <p>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 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당해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② 삭제<2000.3.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체육시설업</p> <p>제10조 (체육시설업의 구분 종류)</p> <p>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9.1.18, 1999.3.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2. 신고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불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p>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모집 시설규모 운영 형태등에 따라 그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p> <p>제11조 (시설기준등)</p> <p>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p> <p>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18></p> <p>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p> <p>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체육시설업</p> <p>제6조 삭제 <2000.1.28></p> <p>제7조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p> <p>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는 별표 2와 같다.</p> <p>제8조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p> <p>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제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여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2. 대중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업 <p>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은 시설규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한다.</p> <p>[전문개정 2000.1.28]</p> <p>제9조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p> <p>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은 별표 3과 같다.</p> <p>제9조의2 (20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등록체육시설업의 관할관청)</p> <p>① 등록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설치장소가 20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할관청이 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관할관청인 시·도지사가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등록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5.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체육시설업</p> <p>제6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p> <p>영 제7조 및 별표 2 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라 함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를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p> <p>제7조 (대중골프장업의 세분)</p> <p>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업의 종류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규대중골프장업 2. 일반대중골프장업 3. 간이골프장업 <p>제8조 (시설기준)</p> <p>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제9조 삭제<1996.5.30></p> <p>제10조 (사업계획승인신청서등)</p> <p>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00.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1.18></p> <p>제13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p> <p>①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9.1.18></p> <p>② 시·도지사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8></p> <p>제14조 (대중골프장의 병설)</p> <p>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라 한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p> <p>[적용기한, 1994.2.7-1999.2.8]</p> <p>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p> <p>①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는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 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투자 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p> <p>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 준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p> <p>제17조 삭제<1999.1.18></p> <p>제18조 삭제<1999.1.18></p> <p>제19조 (회원모집)</p> <p>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p>	<p>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등)</p> <p>① 법 제1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체육시설의 설치장소가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각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견서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해당사항에 관한 협의의견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0.1.28></p> <p>③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승인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20일"은 이를 "10일"로 본다. <개정 2000.1.28></p> <p>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p> <p>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함이 없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원모집의 예정인원 및 임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시설설치공사의 착공예정일 또는 준공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p>② 삭제 <2000.1.28></p> <p>제12조 (사업계획승인의 제한)</p> <p>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골프장업 또는 대중종합체육시설업으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등록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골프장업 또는 회원제종합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2. 삭제 <2000.1.28> 3.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0이상 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0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총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 기기 기구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p>③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p> <p>제11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개정 2000.3.28>)</p> <p>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필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0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p>② 삭제<2000.3.28></p> <p>③ 삭제<2000.3.28></p> <p>제12조 삭제<2000.3.28></p> <p>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p> <p>영 제13조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p> <p>① 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개정 2000.3.28></p> <p>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개정 2000.3.28></p> <p>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p> <p>② 삭제<1999.1.18></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종류·회원수·모집시기·모집방법·모집절차, 회원모집총금액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 (회원의 보호)</p> <p>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대표기구의 구성·역할등에 있어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9.1.18></p> <p>제21조 (체육시설업의 등록)</p> <p>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당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8></p> <p>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춘 것을 조건으로 당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1.18></p> <p>③ 삭제<1999.1.18></p> <p>제22조 (체육시설업의 신고)</p> <p>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18></p> <p>제23조 (체육시설의 이용질서)</p> <p>① 삭제<1999.1.18></p> <p>②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당해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p> <p>③ 삭제<1999.1.18></p> <p>제24조 삭제<1999.1.18></p> <p>제25조 삭제<1999.1.18></p> <p>제26조 (체육지도자의 배치)</p> <p>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p>	<p>합하지 아니하는 경우</p> <p>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방법등)</p> <p>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규모의 대중골프장이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5.28,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골프장의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8홀인 회원제골프장 : 6홀 이상의 대중골프장 나. 18홀을 초과하는 회원제골프장 : 6홀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3홀을 추가하는 규모 이상의 대중골프장 2.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이전까지 대중골프장의 설치공사를 준공할 것. 다만, 시·도지사는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그 등록신청당시 병설대중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의 준공기한을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p>제14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등)</p> <p>① 법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하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8,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치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설하여야 할 대중골프장 1홀당 예치금액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2. 예치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제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및 등록시에 각각 대중골프장조성비 총액의 3분의 1씩을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또는 등록신청당시 제1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사업계획승인시에 예치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및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그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일부터 1년6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기로 한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병설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대중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설하지 아니하고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예치시기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청시 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제1차분·제2차분 또는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해당분에 대하여 동행동호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함께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p>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p> <p>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개정 2000.3.28></p> <p>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등)</p> <p>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 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0.3.28></p> <p>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 매년 2월 말까지 <p>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 2000.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임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p>제16조 (착공계획서 등<개정 2000.3.28>)</p> <p>① 삭제<2000.3.28></p> <p>② 삭제<2000.3.28></p> <p>③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5%의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착공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 감리계약서 <p>다. 삭제<2000.3.28></p>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18></p> <p>제27조 (안전 위생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배치 수질관리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 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개정 1999.1.18></p> <p>제28조 (농약사용 및 검사) 시 도지사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업의 시설의 농약사용양조사와 농약잔류량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p> <p>제29조 (보험가입) 체육시설업자는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18></p> <p>제30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제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5.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5.29> ④ 삭제<1999.1.18></p> <p>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2.12.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정지의 해제 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p>다.</p> <p>제15조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야한다. <개정 2000.1.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관리기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중골프장의 조성을 위한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 2. 대중골프장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등 3. 법인의 설립 운영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및 잉여금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5.28, 2000.1.28> ④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다음 각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2.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에 참여한 예치자가 예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관하여야 한다. 3.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 또는 이관받은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자(그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대중골프장조성비 관리기관은 예치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의 가입등 필요한 재정보증조치를 하여야 한다.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설치규모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0.1.28>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5.28,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1996.5.28> 2. 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3. 전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등기부등본(현금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첨부) 1부 4. 삭제 <1996.5.28> <p>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착공계획서 등) ① 삭제 <2000.1.28></p>	<p>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인가서 신고서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원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등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p> <p>제17조 삭제<2000.3.28></p> <p>제17조의2 (공개모집방법) ① 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전에 그 내용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회원 모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모집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 승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 [본조신설 1996.5.30]</p> <p>제18조 삭제<2000.3.28></p> <p>제19조 (회원모집계획서) 영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6.5.30></p> <p>제20조 삭제<2000.3.28></p> <p>제21조 (회원증의 확인 발급)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 확인 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96.5.30, 2000.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골프장업 골프연습장업 볼링장업 수영장업 스키장업 승마장업 및 체력단련장업 :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외의 체육시설업 :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 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p>제22조 (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등록사</p>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5.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정용등의 허가</p> <p>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p> <p>7.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p> <p>8.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용의 허가</p> <p>9.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p> <p>②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2조 삭제<1999.1.18></p> <p>제33조 삭제<1999.1.18></p> <p>제34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p> <p>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 삭제<1999.1.18>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 삭제<1999.1.18> 삭제<1999.1.18> <p>② 삭제<1999.1.18></p> <p>③ 삭제<1999.1.18></p> <p>제35조 (등록취소 등)</p> <p>① 시·도지사는 등록체육시설업자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영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때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p>② 등록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준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p> <p>제17조 삭제 <2000.1.28></p> <p>제18조 (회원모집시기 등)</p> <p>① 삭제 <2000.1.28></p> <p>②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5.28, 2000.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모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록체육시설업 : 당해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신고체육시설업 :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방법 및 모집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하여야 하되,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 또는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삭제 <2000.1.28> <p>③ 삭제 <1996.5.28></p> <p>④ 삭제 <1996.5.28></p> <p>제18조의2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등)</p> <p>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회원모집약관(당해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사업시설 설치공정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회원모집계획서 또는 회원모집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p>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회원모집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그 제출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p> <p>③ 삭제 <2000.1.28></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의 범위 안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완료될 때까지 회원모집상황(모집인원 및 모집금액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p>	<p>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0.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삭제<2000.3.28>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p>제23조 (등록신청서등)</p> <p>① 영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 등록부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9%생략:서식10%의한다.</p> <p>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1996.5.30, 2000.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제16조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 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 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p>③ 영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그 첨부서류는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p> <p>제24조 (조건부 등록)</p> <p>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서 조건부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00.3.28></p> <p>② 영 제21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4의 시설기준중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편의시설 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3.28></p> <p>제25조 (체육시설업의 신고등)</p> <p>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개정 2000.3.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시설 및 설비개요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하지 아니한 때</p> <p>4. 삭제<1999.1.18> 5. 삭제<1999.1.18> 6. 삭제<1999.1.18> 7. 삭제<1999.1.18> 8. 삭제<1999.1.18> 9.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18></p> <p>제36조 (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명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p> <p>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2.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취소 3.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녹취소 또는 영업의 폐쇄명령[전문개정 1997.12.13]</p> <p>제37조 (체육시설업협회)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일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본조신설 1996.5.28]</p> <p>제19조 (회원의 보호)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6.5.28, 2000.1.28></p> <p>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p> <p>2. 임회금액(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일체의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가입하는 자가 회원 가입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반환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임회금액의 반환시기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에게에 따른다.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임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2의2.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임회금액의 반환 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임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회금의 반환여부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p> <p>3. 회원증의 확인 발급 회원의 임회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교부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4. 회원대표기구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0조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업등록 신청서에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체육시설업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여</p>	<p>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사본</p> <p>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대장에 기록한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26조 삭제<2000.3.28> 제27조 삭제<2000.3.28></p> <p>제28조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p> <p>제29조 (안전·위생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7과 같다.</p> <p>제30조 (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 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 1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5.30, 2000.3.28></p> <p>1. 농약사용량조사 :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농약잔류량검사 :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1조 (보험가입) ① 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 ③ 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 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애어로빅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0.3.28></p>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p> <p>제38조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체육시설 2. 체육시설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각종 체육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9.1.18></p> <p>제39조 삭제<1999.1.18></p> <p>제40조 (시책수립에 필요한 사항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p> <p>제41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18>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p>	<p>야 하며, 그 등록사항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5.28>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웨어웨이·라프·해저드·그린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을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정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재배지등 골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p> <p>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체육시설업의 변경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중 "15일"은 "10일"로 본다.</p> <p>제21조 (조건부등록)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과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0.1.28> 1. 골프장업·회원제골프장업의 경우에는 9홀이상, 대중골프장업의 경우에는 6홀이상 2. 스키장업 3면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②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조건부등록 신청 및 그 변경등록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22조 삭제 <2000.1.28></p> <p>제23조 삭제 <2000.1.28></p> <p>제24조 삭제 <1997.12.31></p> <p>제2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p>	<p>제32조 삭제<2000.3.28></p> <p>제33조 삭제<2000.3.28></p> <p>제34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①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0.3.28>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3.28></p> <p>제35조 삭제<2000.3.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보칙등</p> <p>제36조 삭제<2000.3.28></p> <p>제37조 (보고사항)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5.30, 2000.3.28>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취소 및 승인거부 현황 : 승인등 처분 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매 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 착수 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현황 :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6. 삭제<2000.3.28> 7. 삭제<2000.3.28> ②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현황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0.3.28></p> <p>제38조 (수수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6.5.30, 2000.3.28></p> <p>제39조 (소규모업종)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p>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42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을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1.18> 1.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 삭제<1999.1.18>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위생기준에 위반한 자 4.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을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③ 삭제<1999.1.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p> <p>제44조 (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18> 1. 삭제<1999.1.18>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의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삭제<1999.1.18> 6. 삭제<1999.1.18> 7.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4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9. 삭제<1999.1.18></p>	<p>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8, 2004.3.17> ③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8></p> <p>[별표 1]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관련) <개정 2000.1.28></p> <table border="1" data-bbox="824 411 1397 625"> <thead> <tr> <th>구분</th> <th>체육시설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운동종목</td> <td>골프장, 유희장, 유희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배로도움, 불꽃놀이장, 볼링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것</td> </tr> <tr> <td>시설형태</td> <td>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td> </tr> </tbody> </table> <p>[별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제7조관련) <개정 2000.1.28, 2001.7.7></p> <table border="1" data-bbox="824 746 1397 1139"> <thead> <tr> <th>업종</th> <th>영업의범위</th> </tr> </thead> <tbody> <tr> <td>1. 스키장업</td> <td>눈·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td> </tr> <tr> <td>2. 썰매장업</td> <td>눈·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연휴양림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td> </tr> <tr> <td>3. 요트장업</td> <td>비합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모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td> </tr> <tr> <td>4. 빙상장업</td> <td>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td> </tr> <tr> <td>5. 종합체육시설업</td> <td>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td> </tr> <tr> <td>6. 체육도장업</td> <td>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td> </tr> <tr> <td>7. 테니스장업</td> <td>3면이상의 코트를 갖춘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업</td> </tr> <tr> <td>8. 삭제</td> <td></td> </tr> <tr> <td>9. 무도학원업 <2000.1.28></td> <td>수강료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td> </tr> <tr> <td>10. 무도장업</td> <td>입장료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td> </tr> </tbody> </table> <p>[별표 3] 체육시설업의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의 제한사항(제9조관련) <개정 2000.1.28></p> <p>1. 시설물설치의 제한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824 1244 1397 1444"> <thead> <tr> <th>구분</th> <th>업종</th> <th>제한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설치금지시설물</td> <td>가. 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td> <td>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td> </tr> <tr> <td>나. 골프장업</td> <td>골프장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td> </tr> </tbody> </table>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유희장, 유희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배로도움, 불꽃놀이장, 볼링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업종	영업의범위	1. 스키장업	눈·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2. 썰매장업	눈·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연휴양림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업	비합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모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4.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5. 종합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6. 체육도장업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7. 테니스장업	3면이상의 코트를 갖춘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업	8. 삭제		9. 무도학원업 <2000.1.28>	수강료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10. 무도장업	입장료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구분	업종	제한내용	설치금지시설물	가. 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	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골프장업	골프장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p>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 다.<개정 2000.3.28></p> <p>제4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p> <p>부칙 <제12호, 1994.6.17></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여 최초로 고시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체미종목의 체육도장업을 신고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제3조 (시설기준 및 안전 위생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체육시설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 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별표 4의 시설기준중 골프장업의 골프 코스에 관한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안전 위생기준에 적합하게 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썰매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1995년 7월 1일까지 별표 4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썰매장업의 시설기준 및 안전 위생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제4조 (체육지도자 배치인원에 관한 경과조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1995년 7월 1일까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p> <p>제5조(경기안내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안내원 인원수를 초과하여 골프장에 배치한 골프장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안내원 인원수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는 인원을 증원하거나 감소한 인원을 총원하여서는 아니된다.</p>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종목	골프장, 유희장, 유희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배로도움, 불꽃놀이장, 볼링장,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업종	영업의범위																																					
1. 스키장업	눈·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스키장을 경영하는 업																																					
2. 썰매장업	눈·잔디 기타 천연 또는 인공의 재료로 된 슬로프를 갖춘 썰매장(산림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연휴양림안의 썰매장을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업																																					
3. 요트장업	비합의 힘으로 추진되는 선박(모조추진장치로서 엔진을 부착한 선박을 포함한다)으로서 체육활동을 위한 선박을 갖춘 요트장을 경영하는 업																																					
4. 빙상장업	제빙시설을 갖춘 빙상장을 경영하는 업																																					
5. 종합체육시설업	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동일인이 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나의 단위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																																					
6. 체육도장업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하는 체육도장을 경영하는 업																																					
7. 테니스장업	3면이상의 코트를 갖춘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업																																					
8. 삭제																																						
9. 무도학원업 <2000.1.28>	수강료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사회교육법·노인복지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등을 필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10. 무도장업	입장료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																																					
구분	업종	제한내용																																				
설치금지시설물	가. 스키장업·요트장업을 제외한 체육시설업	업소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골프장업	골프장안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개정 1999.1.18></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1.18></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1.18></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닐 것</p> <p>(2)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4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30킬로미터, 그 하류방향으로 유효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p> <p>(3)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효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아닐 것</p> <p>(4)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협의시 녹지를 모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닐 것(사업계획승인 당시 숙박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골프장에 한한다)</p> <p>(5) 골프장 규모가 18홀 이상일 것</p> <p>(6) 골프장의 방류수의 수질이 800 5mg/l 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7)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수영장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시·군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숙박시설과 누설매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에는 슬로프면적이 1,8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8) 숙박시설 건물의 층수는 5층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제6조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8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p> <p>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중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p> <p>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附則 <제4719호, 1994.1.7></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p>	<p>시설물의 규모제한</p> <p>골프장업</p> <p>(1) 클럽하우스의 연건축면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가) 9홀미만의 골프장: 500제곱미터이하 (나)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600제곱미터이하 (다) 18홀의 골프장: 3,3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내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라)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 3,300제곱미터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600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이하로 하되, 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내의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마) 20이상의 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병설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이 클럽하우스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 내지 (라)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골프장이 설치할 수 있는 클럽하우스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하</p> <p>(2) <삭제></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비고: "클럽하우스"라 함은 골프장부지안의 건축물로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식당, 매점, 휴게실, 사무실, 복도, 계단등 이용자의 편의제공 또는 골프장의 관리·운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카트고, 수위실, 중정비고, 정비고, 창고, 가설건축물, 태양열이용설비, 상수저장탱크, 소각장, 오수처리시설, 전기실, 기계실, 골프코스 사이의 휴게소, 실내주차장,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등을 위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p>제2조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p>	<p>2. 부지면적의 제한사항</p>	<p>부칙 <제24호, 1996.5.30></p>										
<p>① 이 법 시행당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p>		<p>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38호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동 기한이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개정 1999.1.18></p>		<p>제2조 (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또는 이 규칙 시행으로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관련자료의 멸실등으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체육시설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투자비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모집계획서에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 (체육시설업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p>		<p>제3조 (스키장업 체육지도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스키장업은 이 규칙 시행이후 당해스키장의 개장일전까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p>										
<p>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구장업 또는 미용제조장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테니스장업 또는 에어로빅장업으로 각각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38호, 2000.3.28></p>										
<p>제4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701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시설설치 투자비 범위의 적용</p>										
<p>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상이 경과한 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되, 그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중단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시설설치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업종</th> <th>제한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 골프장업</td> <td>골프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1) 6홀미만의 골프장: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2)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3)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 (4) 18홀이상의 골프장: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2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td> </tr> <tr> <td>나. 스키장업</td> <td>스키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스키장의 부지면적 = 전체 슬로프길이(미터) × 50미터 × 4</td> </tr> <tr> <td>다. 자동차경주장업</td> <td>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td> </tr> <tr> <td>라. 골프연습장</td> <td>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td> </tr> </tbody> </table>	업종	제한내용	가. 골프장업	골프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1) 6홀미만의 골프장: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2)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3)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 (4) 18홀이상의 골프장: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2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스키장업	스키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스키장의 부지면적 = 전체 슬로프길이(미터) × 50미터 × 4	다. 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	
업종	제한내용											
가. 골프장업	골프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1) 6홀미만의 골프장: 6만제곱미터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2) 6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장: 34만제곱미터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5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3) 9홀이상 18홀미만의 골프장: 50만제곱미터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제곱미터를 추가한 면적 (4) 18홀이상의 골프장: 108만제곱미터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2천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나. 스키장업	스키장의 부지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스키장의 부지면적 = 전체 슬로프길이(미터) × 50미터 × 4											
다. 자동차경주장업	자동차경주장의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골프연습장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											
<p>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포기하고 같은 장소에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다시 얻은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기간은 다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p>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터 기산한다.</p> <p>제5조 (재해예방시설비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로서 그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시설비를 시·도지사에게 예치하여야 한다.</p> <p>제6조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본다.</p> <p>제7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시·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p> <p>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청소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1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8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로 한다. ② 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제38조제3항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6조 제1항"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승마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1조"로 한다. ③ 여객자동차터미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10제2항제4호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조"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로 한다.</p> <p>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p> <p>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 12. 13></p>	<table border="1" data-bbox="831 167 1402 284"> <tr> <td>장업(실외골프연습장에장업에한한다)</td> <td>적을 한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를, 피칭 및 퍼팅 연습용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td> </tr> <tr> <td>마. 썰매장업</td> <td>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td> </tr> </table> <p>[별표 4]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25조제3항관련) <개정 2000.1.28></p> <table border="1" data-bbox="831 389 1402 692"> <thead> <tr> <th>위 반 행 위</th> <th>해 당 조 항</th> <th>과태료 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 삭제 <2000.1.28></td> <td></td> <td></td> </tr> <tr> <td>2.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td> <td>법 제21조제1항</td> <td>100만원</td> </tr> <tr> <td>2의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td> <td>법 제22조</td> <td>100만원</td> </tr> <tr> <td>3.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td> <td>법 제26조</td> <td>100만원</td> </tr> <tr> <td>4.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td> <td>법 제29조</td> <td>100만원</td> </tr> <tr> <td>5. 및 6. 삭제 <2000.1.28></td> <td></td> <td></td> </tr> <tr> <td>7.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영장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것으로서 수영조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실외수영장업을 말한다)의 영업을 한 경우</td> <td>법 제22조</td> <td>50만원</td> </tr> <tr> <td>8. 영업을 폐쇄명령을 받고 수영장(여름철에만 운영하는 것으로서 수영조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실외수영장업을 말한다)의 영업을 한 경우</td> <td>법 제35조제2항</td> <td>100만원</td> </tr> <tr> <td>9. 삭제 <2000.1.28></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장업(실외골프연습장에장업에한한다)	적을 한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를, 피칭 및 퍼팅 연습용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	마.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	1. 삭제 <2000.1.28>			2.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만원	2의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	100만원	3.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26조	100만원	4.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100만원	5. 및 6. 삭제 <2000.1.28>			7.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영장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것으로서 수영조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실외수영장업을 말한다)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	50만원	8. 영업을 폐쇄명령을 받고 수영장(여름철에만 운영하는 것으로서 수영조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실외수영장업을 말한다)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100만원	9. 삭제 <2000.1.28>			<p>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④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장업(실외골프연습장에장업에한한다)	적을 한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제곱미터를, 피칭 및 퍼팅 연습용코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각각 추가할 수 있다.																																			
마. 썰매장업	썰매장의 부지면적은 슬로프면적의 3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반 행 위	해 당 조 항	과태료 금액																																		
1. 삭제 <2000.1.28>																																				
2.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	100만원																																		
2의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	100만원																																		
3.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법 제26조	100만원																																		
4.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9조	100만원																																		
5. 및 6. 삭제 <2000.1.28>																																				
7.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영장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것으로서 수영조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실외수영장업을 말한다)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2조	50만원																																		
8. 영업을 폐쇄명령을 받고 수영장(여름철에만 운영하는 것으로서 수영조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하인 실외수영장업을 말한다)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100만원																																		
9. 삭제 <2000.1.2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칙 <제5636호, 1999. 1. 18></p> <p>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 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자부터 이를 적용한다.</p> <p>③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육시설업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p> <p>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하천법) <제5893호, 1999. 2. 8></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0>생략</p> <p><31>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제5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p> <p><32>내지 <47>생략</p> <p>제6조 생략</p> <p>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5914호, 1999. 2. 8></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27>생략</p> <p><2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p> <p><29>내지 <41>생략</p> <p>제5조 생략</p> <p>부칙(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5942호, 1999. 3. 31></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p> <p>제10조제1항제2호중 "썰매장업"을 "썰매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으로 한다.</p> <p>②생략</p> <p>부칙(산지관리법) <제6841호, 2002. 12. 30></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8>생략</p>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p><5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 구역내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0>내지 <74>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칙 <제6907호, 2003.5.29></p> <p>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별표 1]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관련) <개정 1996.5.30>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시설종류	설치기준
종합운동장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의한 1종 공인경기장
체육관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영장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의한 1급 공인수영장
기타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의한 시설

2. 시·군

시설종류	설치기준				
	구분	① 혼합형	② 소도시형	③ 중도시형	
운동장	적용기준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미만의 시	인구 10~15만의 시	인구 15만이상의 시	
	경기장규격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관람석	수	5,000석	10,000석	15,000석	
	면적	20,640㎡ (6,244평)	20,640㎡ (6,244평)	20,640㎡ (6,244평)	
	스탠드	계	1,822	3,526	6,178
		일반	273	455	455
체육관	경기장규격	폭 길이 높이 24m×6m×2.4m	폭 길이 높이 24m×6m×2.8m	폭 길이 높이 24m×6m×3.5m	
		부지면적	6,109㎡ (1,848평)	7,124㎡ (2,155평)	8,236㎡ (2,491평)
	건축면적	계	2,541㎡ (769평)	3,011㎡ (911평)	3,743㎡ (1,132평)
		지하층	367	393	467
	연면적(㎡)	1층	1,811	1,926	2,213
		2층	363	692	1,063
	관람석수	500석	1,000석	1,420석	
	수영장	경기장규격	3급공인	3급공인	2급공인
수영조규격		길이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폭	21 ~ 25m	21 ~ 25m	21 ~ 25m
관중석수	-	-	300석		
기타시설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의한 시설				

비고 :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등 지역여건을 참작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별표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관련)

- 시·군·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등의 실내·외 체육시설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입지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
-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팅장, 체력단련장등의 실외체육시설중 지역주민의 선호도·입지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

[별표 3]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관련)

구분	설치기준
500인 이상의 직장	영별표 1의 체육시설중 2종이상의 체육시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개정 2000.3.28>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용인원에 적절한 주차장(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동일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수용인원에 적절한 탈의실·샤워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빙상장업 및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샤워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상방자의 구조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등 해당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
(2)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해당 체육시설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제골프장업 및 정규모준골프장업은 18홀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은 9홀이상 18홀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각 골프코스는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길이·폭 및 파수에 적합하여야 하되, 각 골프코스의 길이를 합한 총길이는 18홀인 골프장은 6,000미터, 9홀인 골프장은 3,000미터, 6홀인 골프장은 2,000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퍼센트 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의 사이중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부분이 20미터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웨어웨이·그린·라프·장애물·홀덱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프용구 운반기구를 갖추고 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골프코스 주변·라프지역·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등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0.3.28>	

나. 스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평균경사도가 7도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슬로프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로프내 이용자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시설(안전망·안전대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를 각 1대이상 갖추어야 한다. 정전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에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 요트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척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요트내에는 승선원인수에 적절한 구명대를 비치하여야 한다.

라.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10척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 수면은 폭 50미터이상 길이 200미터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3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킬로미터이하이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조정(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이상의 구조용선박(모터보트)과 조정(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마. 빙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빙판면적은 9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빙판외곽에 높이 1미터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행병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경주장업

(1) 2륜자동차경주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400미터이상, 폭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트랙의 바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 2륜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4륜자동차경주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이어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이상 15미터이하이어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번째 곡선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 트랙에는 전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감안하여 적절한 시계(경주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트랙의 바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 트랙의 종단구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이하, 내리막 10%이하이어야 한다. ○ 트랙의 횡단구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이상 3%이하, 곡선구간은 10%이하이어야 한다.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백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부분은 트랙의 좌우백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이상 5미터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의한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cm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부분으로 2미터이상, 곡선부분은 위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폭의 2분의1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 = (속도)² / 300
※ 속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 트랙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이상) 또는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망객 및 다른 시설물들을 경주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방지할 수 있게 수직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차장·표지판 및 신호기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곳에 설치하되, 각 감시탑과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이하이어야 하고, 감시탑간에는 육안으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 견인차·구급차·소화기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발생시 견인차·구급차·소화기탑재차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승마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외마장의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에 높이 0.8미터이상의 목책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내마장의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 10두이상의 승마용 마필을 배치하고, 마필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종합체육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의한다.
(2) 임의시설	○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의한다. ○ 수영조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 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제곱미터(시·군은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등 일정범위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제곱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물의 깊이는 0.9미터이상 2.7미터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은 일정한 거리 및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통로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부분으로부터 3미터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자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도약대와 높이 7.5미터이상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이상, 높이 7.5미터이하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영조 주변통로의 폭은 1.2미터이상(헨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수등이 수영조로 침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등 일정범위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의시설
편의시설
○ 물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차. 체육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 볼링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레인을 4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레인은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소음·진동의 방지에 적합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타. 테니스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규 격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종 류</td> <td>가 로</td> <td>세 로</td> </tr> <tr> <td>단 식</td> <td>8.23미터</td> <td>23.77미터</td> </tr> <tr> <td>복 식</td> <td>11.00미터</td> <td>23.77미터</td> </tr> </table> <p>○ 네트는 코트의 세로선으로부터 각각 0.91미터 바깥쪽에 위치한 2개의 포스트 위를 넘어서 매도록 하여야 한다. ○ 네트는 공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짙은 그물이어야 한다. ○ 네트와 높이는 0.91미터이어야 한다. ○ 코트간의 간격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양쪽 세로선과 헨드와의 거리는 3미터이상, 양쪽 가로선과 헨드와의 거리는 5미터이상이어야 한다.</p>	종 류	가 로	세 로	단 식	8.23미터	23.77미터	복 식	11.00미터	23.77미터
종 류	가 로	세 로								
단 식	8.23미터	23.77미터								
복 식	11.00미터	23.77미터								

파. 골프연습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또는 실외에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타석간의 간격이 2.5미터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의한 충격, 전정 기타 다른 설비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연습장에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습 또는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3홀미만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실외골프연습장에는 3홀미만의 골프코스 또는 18홀이하의 퍼칭연습용코스(각 퍼칭연습용코스의 폭·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하. 및 거. <삭제>

나. 체력단련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전용면적은 66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기초체력단련기구 5종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연습용구 10점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신장기·체중기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에어로빅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 바닥면은 운동중 발생하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외부에 소음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러. 당구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3대이상의 당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머. 썰매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15미터이상, 길이 120미터이상의 슬로프를 1면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형에 따라 그 폭·길이의 25퍼센트 범위내에서 감할 수 있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

② 안전시설	(자연성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한다)등을 갖추어야 한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메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삭제>	

버.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기타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업소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룩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룩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6]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8조관련) <개정 1996.5.30>

체육시설업의 종류	규 모	배치인원
골 프 장 업	○ 골프코스 18홀이상 36홀이하	1인이상
	○ 골프코스 36홀초과	2인이상
스 키 장 업	○ 슬로프 10면이하	1인이상
	○ 슬로프 10면초과	2인이상
요 트 장 업	○ 요트 20척이하	1인이상
	○ 요트 20척초과	2인이상
조 정 장 업	○ 조정 20척이하	1인이상
	○ 조정 20척초과	2인이상
카 누 장 업	○ 카누 20척이하	1인이상
	○ 카누 20척초과	2인이상
빙 상 장 업	○ 빙판면적 1,500제곱미터이상	1인이상
	○ 3,000제곱미터이하 ○ 빙판면적 3,000제곱미터초과	2인이상
승 마 장 업	○ 말 20두이하	1인이상
	○ 말 20두초과	2인이상
수 영 장 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실내수영장	1인이상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실내수영장	2인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이하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초과	1인이상 2인이상
볼 링 장 업	○ 14레인이상 30레인이하	1인이상
	○ 30레인초과	2인이상
테 니 스 장 업	○ 코트 6면이상 16면이하	1인이상
	○ 코트 16면초과	2인이상
골프연습장업	○ 20타석이상 50타석이하	1인이상
	○ 50타석초과	2인이상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이하	1인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초과	2인이상
에어로빅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이하	1인이상
	○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초과	2인이상

비 고 : 1.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종류의 체육지도자격을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에 해당하는 인원수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체육시설업의 해당기준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7] 안전·위생기준(제29조관련) <개정 2000.3.28>

1. 공통기준

- (1) 체육시설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시설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 (2)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설비·장비·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폭설·강풍 또는 파도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4) 체육시설업의 해당체육종목의 특성을 참작하여 음주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들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5)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삭제>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재배·병해충방제·체육활동에 적합하게 예초, 농약의 안전한 사용·보관 및 오염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이하인 골프장에는 1인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 스키를 타는 방법 및 기술·안전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및 스키 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인명구조 및 후송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배치하며,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평방미터당 1인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중인 슬로프별로 2인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 (2) 각 리프트의 승·하차장에는 1명이상의 승·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3)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3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요트장업·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해군 또는 해경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요트장의 지형여건등을 참작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자동차경주장업

- (1) 경주참가차량 또는 일반주행차량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 후 경주 또는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경주참가자 또는 일반주행자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3) 경주진행 및 안전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 또는 일반주행자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 (6) 경주기간중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인이 상을, 그외의 운영기간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마. 승마장업

-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

-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헬멧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주변에서 고성방가를 하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체육시설업

종합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위생기준에 의한다.

사. 수영장업

- (1) 수영장·주변공간 및 부대시설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 및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된다.
- (2) 수영장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수심·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정도등을 참작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이내의 수면에 있어서는 5인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개장중인 실외수영장에는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및의료 유사업자에 관한규칙에 의한 간호조무사 1인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 (4) 수영조의 욕수는 1일 3회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욕수의 조절·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
- (6)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방법은 먹는 물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 및 별표 1 제3호 라목의 2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 ㉠ 유리잔류염소는 0.4mg/ℓ 내지 1.0mg/ℓ(잔류염소일 때에는 1.0mg/ℓ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오존소독등으로 사전처리를 하는 경우의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mg/ℓ 이상(잔류염소일 때에는 0.5mg/ℓ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수소이온농도는 5.8 내지 8.6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탁도는 2.8NTU도이하로 하여야 한다.
 - ㉣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ℓ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욕수 5개중 양성인 2개이하이어야 한다.
- (7) 수영장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욕수의 순환회수·잔류염소량·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8) 수영조로 처음 들어가는 자에 대하여는 탈의실·화장실 및 샤워실을 거쳐 들어가도록 하고, 샤워실에서는 전신샤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9) 수영조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10) 감시탑에는 수상안전요원(대한적십자사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영장협회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을 2인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아. <삭제>

자. 썰매장업

-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인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2) 슬로프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1미터이상, 높이 50센티미터이상의 눈을 쌓아야 한다.
-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기타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1인,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에 2인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2)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34조제1항관련) <개정 2000.3.28>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이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회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기준에 의한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함에 있어 처분권자가 일정기간내에 개선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 1년내에 같은 내용을 5차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위반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위반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위반 (가) 병설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준공하지 아니할 때 (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할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2) 법 제21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나)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 록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때	경 고 등록취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3) 법 제22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나) 중대한 사항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때	경 고 영업폐쇄명 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4)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 에 영업을 한 때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			

[별지 제1호서식]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직 장 명		② 상시직장인수	명
③ 소 재 지	(전화 :)		
④ 면제신청사유			
⑤ 앞으로의 계획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직장체육시설의 설치면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면제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직장체육시설설치 면제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기관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5일
작 성 방 법	④란은 설치면제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향후 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 확실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6259-05311민
94.4.19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0.3.28>

(제1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제2면 및 제3면의 작성방법과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④업 종	⑤상 호
⑥시설설치장소	
⑦부 지 면 적	m ² ⑧건 축 물 동수 : 동, 연건축면적 : m ²
⑨주요시설 규모·규격	
⑩회원모집계획 중인원수	명
⑪시설설치기간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본문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 x 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작성방법 (제2면)

①란은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종류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⑥란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다수인 때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수)까지 기재하십시오.
⑧란은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의한 운동시설·안전시설·편의시설·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기재하십시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운동시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업 : 홀수, 홀별 길이·파수 및 면적 ○ 스키장업 : 슬로프수, 슬로프별 길이·평균경사도·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요트장업 : 요트용 용도별 선박척수, 계류장 및 요트보관소 면적·수용능력 ○ 조정(카누)정업 : 수면의 폭·길이 및 수심, 조정(카누)정수 ○ 빙상장업 : 빙판면적, 제빙시설의 종류 및 용량 ○ 사동차장업 : 트랙의 길이 ○ 승마장업 : 마장의 형태·면적, 마필수 ○ 종합체육시설업 : 운동시설의 종류별로 형태·규모 및 규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안전시설·편의시설 및 관리시설</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용도·규모
⑩란은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고자 하는 회원의 총 인원을 기재하십시오.

210mm x 97mm (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 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제3면)

수 수 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6.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령가입 등) 12.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관련법규	○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 제13조, 영 제12조		
유의사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제1호). ○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0.3.28>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변경승인신청내용	④당초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⑤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내용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안내

수 수 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20일
유의사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제1호).		
작성방법	④란은 별지 제2호서식 ⑥~⑧란에 해당되는 사항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내용(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당초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0.3.28>

착 공 계 획 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전화 :)
체시설 육업	③주 소	(전화 :)	
	④업 종	⑤시설설치장소	
주 공 자	⑥성명(대표자)		
	⑦업 체 명	(전화 :)	
⑧주 소	(전화 :)		
⑨ 착 공 예 정 일	년 월 일	⑩준공예정일	년 월 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 비 서 류	1. 공정계획표 1부 2. 시공·감리계약서 사본 1부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인가서 및 신고서 등의 사본 1부		

* 착공계획서 제출안내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즉 시
작성방법	④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영 제8조 또는 제7조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의 종류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996.5.30>

(앞 면)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 호</p> <p style="font-size: 24px; margin: 10px 0 0 0;">등 록 증</p>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상 호 :</p>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영업소소재지 :</p>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p>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업 종 :</p>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을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24px; margin: 0;">특별시장 자치 장 인</p>
--

26259-06011비 210mm×97mm
94.4.19 승인 (인쇄용지(2급) 60g/㎡)

(뒷 면)

① 시설 설치 내역		
② 변경 등록		
처리일자	변경 내용 및 그 원인	기록자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0.3.28>

(앞 쪽)

<p style="font-size: 18px; margin: 0;">변경 등록 신청서</p>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 뒷면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영업소소재지 (전화 :)	
④당초 등록된 내용	⑤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을 제2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margin: 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margin: 0;">신청인 (서명 또는 인)</p>	
구 비 서 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안내 (뒤 쪽)

수 수 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20일
관련법규	○ 법 제21조제1항 단서, 제22조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유의사항	○ 변경등록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의 기록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 제20조제3항 및 제5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2호).		
작성방법	④란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당초의 등록내용을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④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0.3.28>

(앞 쪽)

<p style="font-size: 18px; margin: 0;">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p>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p>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영업소	④상 호	⑤전 화 번 호	
	⑥소 재 지		
	⑦종 류		
	⑧규 모		

⑨체육지도자	성 명	자격종류 및 번호			
	주 소				
⑩회원모집계획총인원 명					
⑪변경신고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년 월 일	
	변 경 전		변 경 후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을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margin: 0;">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margin: 0;">신고인 (서명 또는 인)</p>					
구비서류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1.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p>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p>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p>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함) 1부</p> <p style="font-size: 12px; margin: 0;">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p>				
	구분	구비서류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 인 자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비 고

210mm×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체 육 시설 업 신고 안내

(뒤 쪽)

수 수 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신 고 : 3일 변경신고 : 2일
근거법규	○ 법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수영장업 6. 체력단련장업 2. 체육도장업 7. 에어로빅장업 3. 볼링장업 8. 당구장업 4. 테니스장업 9. 썸매장업 5. 골프연습장업 10. 유도회관업 11. 무도장업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 제2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때에는 폐쇄명령 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필증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의 기록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⑦란은 체육시설의 종류(수영장, 체육도장등)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기재합니다. ⑩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